



#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17년 11월 8일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일 시 : 2017 11. 8.(수) 14:00 ~ 16: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사 회 :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 14:10	개회사/인사말	이경숙 상임위원
14:10 ~ 14:20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개요	양옥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20 ~ 14:40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양적조사 분석결과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40 ~ 15:00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질적조사 분석결과	배은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00 ~ 15:10	휴식	
15:10 ~ 15:15	좌장 인사 및 토론 소개	
15:15 ~ 16:15	지정 토론	신인순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은정 소장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서수연 센터장 (쌍주 월곡지역아동센터)
16:15 ~ 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모두
16:30 ~	폐회사	



---

# 목차

---

■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개요 .....	1
양옥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조사 .....	15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 심층면접 분석 .....	77
배은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신인순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	111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117
김은정 소장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119
서수연 센터장 (월곡지역아동센터) .....	127



#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개요

양옥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I.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개요

양옥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에 대하여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과 주요 권리이행의무자인 성인(부모와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상이한 인식수준의 원인 분석 및 관련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17년 5월 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권고에 관한 제 5,6차 정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음.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권고가 발표된 이후 아동권리 협약 9개 영역, 2개의 선택의정서에서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후속조치가 있어 왔음(국가인권위원회, 2015).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지표와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기준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가입국가 대비 최하위로 나타남(염유식 외, 2016). 한국 아동의 행복감은 16개 국가<sup>1)</sup> 하위권에 해당하였으며 만8세의 경우 14위로 나타남(2017.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의 생존에 필수적인 안전과 건강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는 권리주체인 아동과 권리이행의무자인 성인 모두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아동과 성인의 아동권리인식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율은 14.4%~25.6% 수준으로 나타남(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1) 알제리, 콜롬비아,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폴란드 등 16개 국가, 만8세, 만10세, 만12세 아동 5만6천명 조사 결과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양육자는 1.3%였으며, 들어봤고 약간 알고 있는 경우는 6.6% 수준이었음. 아동권리보장정도에 대해 64.4%가 ‘약간은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7.5%가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김미숙 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에 있어 인권보호 및 신장의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이 요구됨에도 지역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인권조례가 마련되지 않거나, 아동청소년 인권을 다루는 조례가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편차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자체별 차이는 각 시·도·교육청별 인권교육 편차에 따른 인권의식 격차의 심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전광석 외, 2015).

- 실제 지역 간 아동의 삶의 질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6) 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으로 삶의 질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관련조례 :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조례,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인권조례,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 시민인권관련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온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진전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체벌 금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체벌금지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아동청소년과 교사, 부모 등 성인의 체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6).

- 「제3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최근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정책개선이 진행되어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기존연구는 아동권리침해경험여부 또는 인지 여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아동의 권리인식에 접근하고 있어, 실제 조사 응답과 인식 간 차이 또는 낮은 인식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제약이 높음.
  - 특히,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 및 권리이행의무자(가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서비스제공자 등)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표면적인 접근을 넘어,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필요로 하는 세부 주제에 집중하여 심층 분석 예정이며,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과 권리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수준 및 경험(이슈 및 제도적 경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진행하였음.
- 상이한 인식 수준의 원인 분석 및 관련제도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권리 인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아동청소년권리 국제기준 및 권고 이슈별 분석 및 체계화
  -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의 중점분야 설정
-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조사 설문문항 구성(표 1)
  - 아동권리개념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 인권 경험 뿐 아니라 권리보장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자원 인식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였음.
  - 아동, 부모, 교사 집단 간 인식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정 항목을 공통으로 배치하였음.
  - 아동이 가장 침해받고 있는 아동폭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동권리인식 및 발달 산물 간 관계를 보기 위하여 결핍지수, 사회적 바람직성, 친사회성 등의 척도를 추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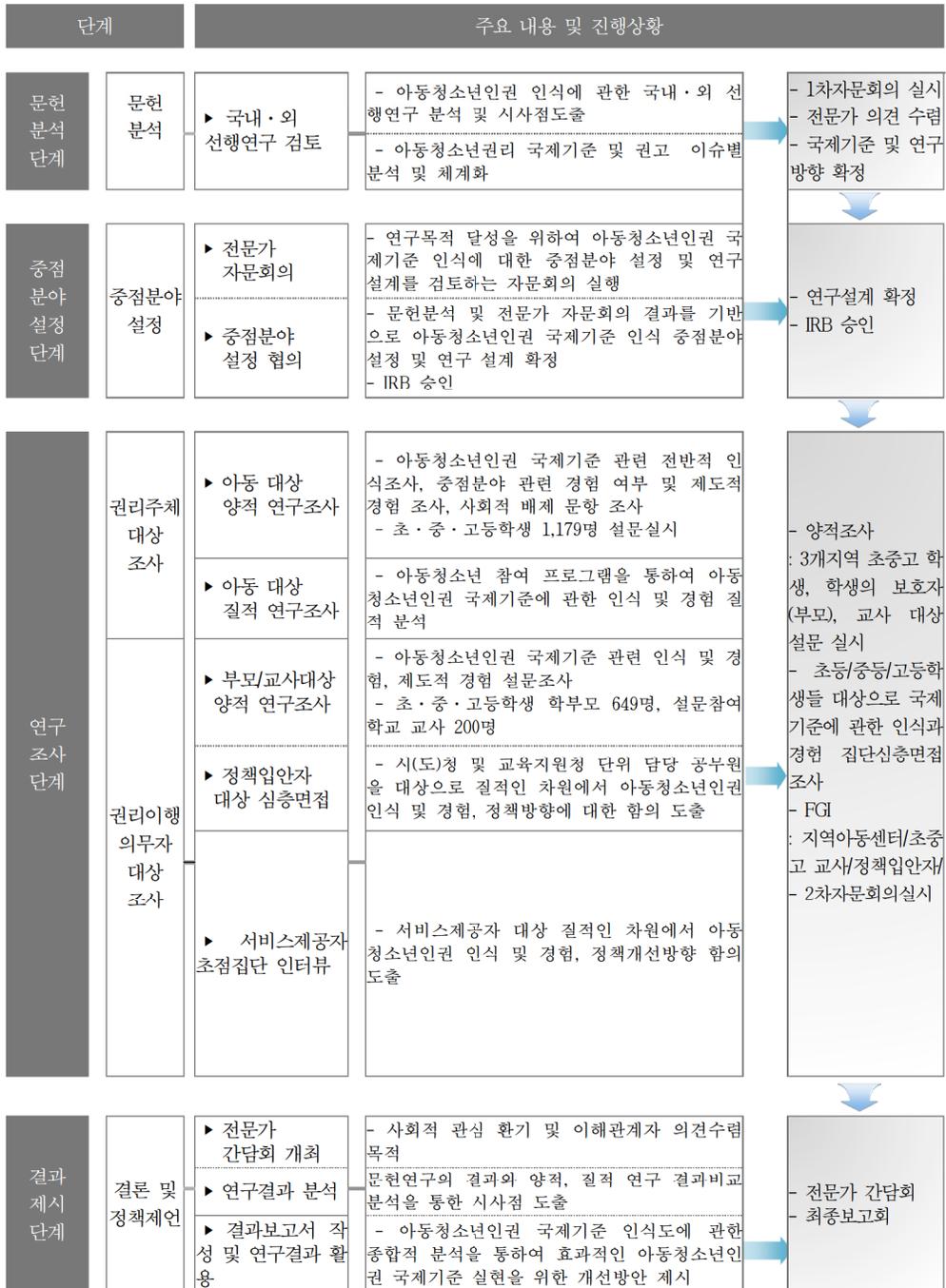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인권에 있어 아동에 대한 폭력 및 기타 주제 관련 제도적 경험 여부 조사: 관련 법 및 정책, 복지제도 인지수준 및 서비스 경험
-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위해 비네뜨(Vignette)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8개 상황-놀이터, 급식, 사회연결망서비스, 쉼 권리, 사생활, 체벌, 선거, 수업시간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 아동의 권리 존중 판단 여부를 살펴보았음.

〈표 1〉 설문구성

영역	아 동	보 호 자	교 사	출처
<b>1. 인권지식 영역</b>				
인권지식	○	○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문41) 아동권리/아동복지법/아동친화도시 추가
인권지식습득경로	○	○	○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2016.국민인권의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 초등학생(문4)/중학생(문3)/일반국민(문2) 수정
아동청소년 권리 중요성 인식	○	○	○	중·고등학교 인권 상황 실태.2006. 국가인권위원회(문21)
<b>2. 인권 경험 영역</b>				
인권교육경험	○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문17)
인권교육 주체 및 방식	○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문17-1)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조회·종례시간(학교) 등 대상별 항목 추가
인권교육필요성	○	○	○	중·고등학교 인권 상황 실태.2006. 국가인권위원회(문26)
부모(보호자) 의사존중태도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문18)
학교 존중 경험	○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문33)/충남아동청소년인권실태.2015. 최현호 외.(문16일부수정)
학교 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척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2015. 초1패널(초6)(문22) 일부수정
(아동의) 설 권리 및 놀 권리 실태	○	○	○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2016.국민인권의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 초등학생(문25) 일부수정
충분히 못 쉬는/노는 이유	○	○	○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2016.국민인권의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 초등학생(문25-1) 일부수정 및 자체구성
학교폭력제도 경험	○	○	○	* 자체구성
<b>3. 아동권리인식 영역</b>				
아동청소년 권리 중요도 인식	○	○	○	
아동청소년 미충족 권리 인식	○	○	○	
아동권리판단	○	○	○	* Vignette 자체구성

영역	아 동	보 호 자	교 사	출처	
<b>4. 차별/제별 인식 영역</b>					
아동청소년권리인식(차별)	○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문44,45), 일부 수정 및 자체구성	
제별 필요성 인식	○	○	○	자체구성	
인권보장주체에 대한 인식	○	○	○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3.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용 (문11, 수정)	
<b>5. 인권침해 대처행동/사회적 바람직성/학교조직문화영역</b>					
폭력 경험 시 이용 가능한 자원 인식 및 경험 여부	○	○	○	*자체구성	
우울 등 심리적 위기 시 이용 가능한 자원 인식 및 경험 여부	○			*자체구성	
아동결핍지수	○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OECD Child deprivation	
사회적 바람직성	○	○	○	김용석(2008),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친사회적행동척도	○			박서영(2012), ‘청소년의 정서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및 아동패널조사 문항 재구성	
학교폭력 정서가해경험	○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 보고서 2009. (문 37) 일부수정(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문항을 가해경험으로 변경하여 구성)	
학교 조직 문화			○	2007, 김한분, 초등학교의 조직문화 형태, 학습조직 수준 그리고 조직효과성간의 관계	
<b>6. 인구사회학적 정보</b>					
인구사회학적 정보	○	○	○	아 동	성별/나이/학년/종교/아버지최종학력/어머니 최종학력
				보 호 자	성별/나이/종교/최종학력/아동과의 관계/결혼상태/직업
				교 사	성별/나이/종교/교직경력/직급/담임여부
보호자 근로활동 참여 여부	○				
학교성적인식	○				
가정경제수준인식	○	○			
자기 생활 인식	○				* 자체구성 건강/학교생활/또래관계/보호자상호작용시간/행복 인식

### 3. 연구 절차



<그림 1> 연구체계도

#### 4. 연구방법

##### ○ 권리주체 및 권리의행의무자 대상 양적 조사 수행

- 권리주체(아동·청소년) 및 권리의행의무자(해당 아동의 부모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3개 지역을 선정, 지역별 초등/중등/고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초등 5학년, 중등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음.
- 최종 아동 1,179명, 보호자 649명, 교사 200명의 데이터가 확보되었음.
- 빈도분석, 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Duncan 사후검정, Scheffe 사후검정 등의 통계방법 사용하였음.

##### ○ 권리주체 대상 인식 및 경험의 질적 조사 수행(표2)

-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아동권리의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체화 수준을 조사하였음.
- 초등/중등/고등 각 그룹별로 진행되었으며, 각 3명씩 총 15명으로 각 1회씩 2-2.5시간이 소요되었음.
- 참여아동의 연령 및 아동권리교육경험, 아동권리관련 활동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 가능하도록 보조도구(권리카드, 에피소드 제공 등)를 활용하였음.
- 자료들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분석되었음.

〈표 2〉 권리주체 대상 인식 및 경험의 질적 조사 주제

구분	활동내용	비고
주제 1	<p>〈아동권리 관련 교육 경험〉</p> <p>※ 아동권리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어떠하였나요?</p> <p>#1. (중고등)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면 좋을까요?</p> <p>#2. (중고등)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아동권리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반영 또는 강조되면 좋을까요?</p>	
주제 2	<p>〈아동/나에게 중요한 권리〉</p> <p>※ 권리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및 의견 나누기</p> <p>#1.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권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이유는?)</p> <p>#2.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유는?)</p>	(초등) 권리카드
주제3	<p>〈상황별 권리〉</p> <p>※ 상황별 에피소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나누기</p> <p>#1. (중고등-체벌, 학교폭력 상황) 일상생활에서 폭력과 관련된 아동권리침해상황, 얼마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사회에서의 대처 방식이 효과적인가요?</p> <p>#2. (중고등) 일상생활에서 권리침해상황을 직접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 적이 있나요?</p>	(초등) 비네뜨 질문 동일 에피소드 제공
주제4	<p>〈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p> <p>#1.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정/학교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p>	
주제5	<p>〈우리가 제안하는 아동권리실천방안〉</p> <p>#1. 대통령 또는 장관과의 만남이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p>	

○ 권리이행의무자 대상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 조사(표3)

-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입안자 대상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 및 경험에 관한 FGI를 실시하였음.
- 초점집단인터뷰는 단기간에 다량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제 분야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Kitzinger, 1994).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하여 권리이행의무자인 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각 집단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음.

- 참여자는 총 19명이었음.
- 집단별로 각 1~2회에 걸쳐 초점집단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1회 당 120-150분 정도 소요되었음.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였음.
- 자료들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분석되었음.

〈표3〉 권리이행의무자 대상 FGI 주요 질문

No	질문내용
1	근무하고 계신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2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이후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선정, 인권 조례 상정 등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법적,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근무하고 계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변화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3	아동인권 관련 4대 권리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아동 및 부모, 서비스 제공자(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교육에 추가 혹은 강화되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5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이나 정책입안 과정에서 경험하시는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6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과 제안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 5. 참고문헌

- 구정우·김선웅·김두년·유성상·정병은·신인철. 2016. 『2016년 국민인권익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16.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김경준. 2014.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Ⅳ: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전진아·하태경·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옥기. 2015. 『학교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 염유식 외. 2016. 『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이명순. 2008. 『학생인권실태분석 및 신장방안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이봉주 외. 2015.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지수』.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이상경. 2015. 『인권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분담론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43(3)
- 이양희·오동석·정병수·김희진·전미아·김강한.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은주.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추진방향』. 아동과 권리. 16(3):433-448.
-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연구소. 2013.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 전광석. 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사회권)』
- 황옥경. 2012.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Ⅱ.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현실과 대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옥경 외. 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조사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II.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 조사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조사의 문항 구성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는 초등학생 365명, 중학생 526명, 고등학생 288명, 총 아동·청소년 1,1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별로 보면 아동 11,79명, 보호자 649명, 교사 200명으로 A, B, C 3개 지역 총 2,0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총 188개 문항(문항 번호는 총 31개 문항)이며, 보호자의 경우 총 126개 문항(문항번호는 총 29개 문항), 교사의 경우 총 148개 문항(문항번호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국제기준 인식도 설문지를 내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조사 아동·청소년 설문지의 주요 영역 별 구성

영역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인권지식	인권지식 I	1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도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습득 경로	1-1	인권 지식 습득 경로) 위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까?	
	인권 지식 II	2	1)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 2) 한국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을 때리면 안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3) 학교에서 선생님 등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4)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5)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1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아동청소년 권리지식	3	권리에 대한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권교육 경험	4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회입니까?	
인권경험	인권교육 경로	5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인권교육 방식과 효과	6	인권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6-1	인권교육은 일상에서 인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인권교육의 필요성	7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사결정존중 태도(보호자)	8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v 표 해주세요	
	학교 존중 경험	9	학교에서의 존중 경험에 대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v 표 해주세요	
	학교생활적응	10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잘 읽고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쉼 권리		11	나는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1-1	내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이 권리		12	나는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2-1	내가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관련 제도 인식	13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읽고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표 2>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조사 보호자 설문지의 주요 영역 별 구성

영역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인권지식	인권지식 I	1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도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습득 경로	1-1	인권 지식 습득 경로) 위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까?
	인권 지식 II	2	1)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 2) 한국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을 때리면 안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3) 학교에서 선생님 등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4)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5)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1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아동청소년 권리지식	3	권리에 대한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권경험	인권교육 경험	4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회 입니까?
	인권교육 경로	5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인권교육 방식과 효과	6	인권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6-1	인권교육은 일상에서 인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7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별 인권교육의 필요성	8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결정 존중태도 (보호자)	10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보호아동의 학교생활	11	보호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잘 읽고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영역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인식 중요도 인식	14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아동권리 미보장 영역 인식	15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아동권리 상황판단	16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차별/차별 인식	인권 평가	1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한 다음 의견들을 잘 읽고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차별필요성 인식(교사)	18	선생님이 학생에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별필요성 인식(보호자)	19	보호자(부모)가 보호아동(자녀)을 차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권보장 주체(교사)	20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권보장주체(보호자)	21	보호자(부모)는 보호아동(자녀)의 인권을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권침해 대처행동 / 아동결핍지수 / 사회적 바람직성	폭력/우울/심리적 위기/지원 제도 인식과 경험	22	폭력, 우울, 심리적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읽고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경험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아동결핍지수	23	다음 항목들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사회적 바람직성	24	다음 항목들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친사회적행동 척도	25	다음 항목들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인구사회학적 상황	학교폭력 가해경험	26	다음은 최근 1년동안 학교에서의 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나의 경험에 해당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인구사회학적 정보	27	성별/나이/학년/종교/부모님 최종학력
	근로활동 참여여부 (보호자)	28	부모님의 근로 활동 참여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V표 해주세요.
	학교성적 인식	29	나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경제 수준인식	30	우리 집의 경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생활인식	31	건강/학교생활/또래관계/보호자와의 상호작용시간/개인과 가족의 행복도 인식

영역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인권경험	쉼 권리	12	아이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2-1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이 권리	13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3-1	내가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관련 제도 인식	14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읽고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인식 중요도 인식	15
아동권리 미보장 영역 인식		16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아동권리 상황판단		17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차별/제별 인식	인권 평가	18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한 다음 의견들을 잘 읽고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차별필요성 인식(교사)	19	선생님이 학생에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별필요성 인식(보호자)	20	귀하는 보호아동(자녀)을 차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권보장 주체(교사)	21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권보장 주체(보호자)	22	귀하는 보호아동(자녀)의 인권을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권침해 대처행동/ 사회적 바람직성	폭력/우울/ 심리적위기/ 지원 제도 인식과 경험	23	아동·청소년이 폭력, 우울, 심리적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읽고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경험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친사회적 행동척도	24	다음 항목들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인구사회학적 상황	인구사회학적 정보	25	성별/나이/학년/종교/최종학력
	아동과의 관계	26	아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결혼상대	27	귀하의 결혼 상대는 어떠하십니까?
	직업	28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경제수준	29	귀하의 가정 경제생활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표 3〉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조사 교사 설문지의 주요 영역 별 구성

영역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인권지식	인권지식 I	1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도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습득 경로	1-1	인권 지식 습득 경로) 위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까?
	인권 지식 II	2	1)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 2) 한국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을 때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학교에서 선생님 등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4)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5)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1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아동청소년 권리지식	3	권리에 대한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권경험	인권교육 경험	4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회입니까?
	인권교육 경로	5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인권교육 방식과 효과	6	인권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6-1	인권교육은 일상에서 인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7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별 인권교육의 필요성	8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의 존중경험	10	학교에서의 존중경험에 대한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실 권리	11	아이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1-1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역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인권경험	놀 권리	12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2-1	내가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관련 제도 인식	13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읽고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 중요도 인식	14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아동권리 미보장 영역 인식	15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아동권리 상황판단	16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차별/체별 인식	인권 평가	1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한 다음 의견들을 잘 읽고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체벌필요성 인식(교사)	18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벌필요성 인식(보호자)	19	보호자가 보호아동을 체벌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권보장 주체(교사)	20	귀하는 학생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권보장 주체(보호자)	21	보호자는 보호아동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권침해 대처행동/ 사회적 바람직성/ 학교조직 문화	폭력/우울/ 심리적위기/ 지원 제도 인식과 경험	22	아동·청소년이 폭력, 우울, 심리적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읽고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경험과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사회적 바람직성	23	다음 항목들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일치하는 응답에 V표 해주세요.
	학교 조직문화	24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사회학적 상황	인구사회학적 정보	25	성별/나이/학년/종교/교직경력/직급/담임 여부

## 2.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1)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의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실태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의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조사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 ① 기술통계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A, B, C의 초중고 재학생 및 보호자, 교사를 모집단으로 표집한 2,028명이다. 이들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표 4>와 같은데, 학생이 1,179명으로 가장 많고, 보호자는 649명, 교사는 200명이다.

<표 4> 응답자의 집단별 비율

	빈도	백분율(%)
학생	1,179	58.1
보호자	649	32.0
교사	200	9.9
합계	2,028	100.0

응답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 거주 지역별 분류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A	316	26.9	155	23.9	39	19.5
B	288	24.3	208	32.0	43	21.5
C	576	48.9	286	44.1	118	59.0
합계	1,179	100.0	649	100.0	200	100.0

응답자 대상별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6>, <표 7>, <표 8>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비가 균등한 수준이었고, 교급의 경우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조사 참여율이 높았다. 종교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7%가 ‘종교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부모의 최종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대졸이상의 응답이 전체 응답의 약 40%를 차지했다.

보호자의 경우는 여성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2.3%로 나타났고, 연령대로는 만 40~50세가 69.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교사의 경우도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73.7%, 남성 26.0%로 성비의 차이가 컸고,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게 조사되었다. 교직경력은 10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전체 41.5%로 가장 높았으며 10~20년 이상, 20~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율은 24.4%와 26.4%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는 71.3%로 평교사가 가장 높았으며, 담임을 맡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65.3%로 조사되었다.

<표 6> 아동·청소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1,179)	남자	574	50.2
	여자	570	49.8
나이 (n=1,179)	만 10세	96	8.3
	만 11세	229	19.9
	만 12세	39	3.4
	만 13세	61	5.3
	만 14세	423	36.8
	만 15세	17	1.5
	만 16세	62	5.4
	만 17세	212	18.4
	만 18세	11	1.0
	만 19세	1	0.1
교급 (n=1,179)	초등학교 5학년	365	31.0
	중학교 2학년	526	44.6
	고등학교 2학년	288	24.4

구분		빈도	백분율(%)
종교 (n=1,179)	종교없음	688	59.8
	기독교(개신교)	231	20.7
	불교	90	8.1
	기독교(천주교)	92	8.2
	기타	36	3.2
아버지 최종학력 (n=1,179)	중졸이하	26	2.7
	고졸	280	29.2
	대졸	477	49.7
	대학원졸	177	18.4
어머니 최종학력 (n=1,179)	중졸이하	26	2.7
	고졸	315	32.6
	대졸	469	48.5
	대학원졸	157	16.2

<표 7> 보호자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649)	남자	102	16.0
	여자	534	84.0
나이 (n=649)	만 30세 이하	7	1.1
	만 30~40세	117	19.0
	만 40~50세	452	73.3
	만 50~60세	37	6.0
	만 60세~70세	4	.6
종교 (n=649)	종교없음	334	53.2
	기독교(개신교)	133	21.2
	불교	93	14.8
	기독교(천주교)	59	9.4
	기타	9	1.4
최종학력 (n=649)	중졸이하	16	2.6
	고졸	270	44.6
	대졸	289	47.8
	대학원졸	30	5.0

〈표 8〉 교사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200)	남자	52	26.3
	여자	146	73.7
나이 (n=200)	만20~30세	35	18.5
	만 30~40세	56	29.6
	만 40~50세	53	28.0
	만 50~60세	43	22.8
	만 60~70세	2	1.1
종교 (n=200)	종교없음	111	56.6
	기독교(개신교)	50	25.5
	불교	16	8.2
	기독교(천주교)	17	8.7
	기타	2	1.0
교직경력 (n=200)	1~10년	80	41.5
	10~20년	47	24.4
	20~30년	51	26.4
	30년 이상	15	7.8
직급 (n=200)	평교사	139	71.3
	부장교사	50	25.6
	교감	4	2.1
	교장	2	1.0
담임여부 (n=200)	담임	128	65.3
	비담임	68	34.7

② 인권지식 습득 경로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한 경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50.7%로 가장 높았고 인권교육 자료집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2.1%로 가장 낮았다. 보호자의 경우도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90.4%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49.5%, 신문, 잡지, 책을 통한 습득이 30.0%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72.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포털,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58.0%, 강연, 연수를 통한 습득이 50.0%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를 통한 습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집단은 아동·청소년 집단과 보호자 집단에 비해 ‘강연,연수’와 ‘학교 인권홍보물’을 통한 지식 습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인권지식습득 경로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598 (50.7%)	500 (90.4%)	145 (72.5%)
신문,잡지,책	241 (20.4%)	195 (30.0%)	79 (39.5%)
인터넷(포털,블로그,SNS등)	449 (38.1%)	321 (49.5%)	116 (58.0%)
정규교육(학교 수업 등)	252 (21.4%)	46 (7.1%)	46 (23.0%)
강연, 연수	62 (5.3%)	80 (12.3%)	100 (50.0%)
가족/친구들과의 대화	188 (15.9%)	55 (8.5%)	24 (12.0%)
인터넷커뮤니티	131 (11.1%)	74 (11.4%)	29 (14.5%)
학교 인권홍보물	68 (5.8%)	63 (9.7%)	55 (27.5%)
인권교육자료집	25 (2.1%)	13 (2.0%)	36 (18.0%)
학교 이외 단체, 기관	167 (14.2%)	54 (8.3%)	21 (10.5%)
기타	31 (2.6%)	6 (0.9%)	0 (0.0%)

### ③ 아동학대 신고 번호 인지 수준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25.7%, 보호자의 53.5%, 교사의 63.0%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자와 교사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4명중 3명이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0〉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정답자 수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112	280 (25.7%)	324 (53.8%)	126 (63.3%)

### ④ 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수준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횟수와 교육경로에 대한 물음에서 아동·청소년은 ‘받은 적 없음’이 34.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호자의 경우에도 77.2%가 ‘받은 적 없음’이 가장 높았고, 교사의 경우에는 ‘1회’ 받았다가 2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인권교육을 경험했던 경로에 대한 물음에서 아동·청소년은 학교 정규교과 시간(63.7%), 보호자는 직장내 학교 정규과정(29.2%), 교사는 온/오프리인의 직무연수(57.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의 횟수와 물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들에게서 ‘1번도 받은 적 없음’이 각각 34.0%, 77.2%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이라는 용어에는 친숙해졌지만, 구체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의 경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경우 인권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아동·청소년과 교사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1〉 인권교육 경험 정도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받은 적 없음	392 (34.0%)	491 (77.2%)	45 (24.0%)
1회	283 (24.6%)	62 (9.7%)	71 (35.5%)
2회	202 (17.5%)	43 (6.8%)	55 (27.5%)
3회	153 (13.3%)	18 (2.8%)	11 (5.5%)
4회	33 (2.9%)	7 (1.1%)	8 (4.0%)
5회 이상	89 (7.7%)	15 (2.4%)	7 (3.5%)

〈표 12〉 인권교육 경험 경로

인권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국가인권위원회	8 (1.1%)	3 (2.1%)	3 (2.0%)
지자체 등 공공기관	38 (5.0%)	29 (20.1%)	41 (27.0%)
학교	정규 교과시간	482 (63.7%)	42 (29.2%)
	창의적 체험활동	125 (16.5%)	
	조희, 중례시간	38 (5.0%)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66 (8.7%)		
대학교		4 (2.8%)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87 (57.2%)
시민단체		8 (5.6%)	9 (5.9%)
직장		42 (29.2%)	
온라인커뮤니티		16 (11.1%)	30 (15.1%)
기타			12 (7.8%)

### ⑤ 인권교육의 방식과 효과 수준

아동청소년은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인권교육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고 ‘토론 중심의 활동’을 통한 경험은 2.7%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호자와 교사의 경우는 ‘강사 설명 및 인쇄자료’를 통한 교육 경험이 각각 57.3%, 70.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역할극 또는 놀이 형태의 교육’이 1.4%, 1.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세 대상 집단 모두 강사의 설명이나 인쇄자료,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한 인권교육의 경험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의 적용을 위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68.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의 경우 68.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교사의 경우에도 ‘그렇다’가 70.7%의 응답 수준을 나타냈다. 세 집단 모두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80% 이상 ‘그렇다’고 답해 교육의 현실적인 효과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13〉 인권교육 방식

인권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강사 설명 및 인쇄자료	330 (43.1%)	82 (57.3%)	106 (70.2%)
관련 동영상 시청	383 (50.1%)	50 (35.0%)	40 (26.5%)
토론 중심의 활동	21 (2.7%)	9 (6.3%)	3 (2.0%)
역할극 또는 놀이 형태의 교육	31 (4.1%)	2 (1.4%)	2 (1.3%)

〈표 14〉 인권교육의 효과

인권교육은 일상에서 인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전혀 그렇지 않다	22 (2.9%)	3 (2.0%)	0 (0.0%)
그렇지 않다	108 (14.2%)	13 (8.8%)	15 (27.0%)
그렇다	523 (68.7%)	101 (68.7%)	106 (70.7%)
매우 그렇다	108 (14.2%)	30 (20.4%)	29 (19.3%)

⑥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60.6%가 ‘그렇다’ 라고 답했으며 ‘33.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의 93.6%가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보호자의 경우도 65.3%가 ‘그렇다’, 31.8%가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였고 교사의 경우에는 ‘그렇다’ 57.5%, ‘매우 그렇다’ 39.5%로 역시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의 응답을 합친 결과가 97.0% 에 달해 세 집단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서는 우선 보호자에게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아이들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보호자의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의 응답을 합한 결과가 전체 응답의 99.1%에 달해 교사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교육역시 ‘그렇다’ 48.1%, ‘매우 그렇다’ 50.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98.4% 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가 58.0%, ‘그렇다’ 가 41.0%로 응답하였고,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역시 ‘그렇다’ 46.0%, 52.5%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98.0% 이상이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인권교육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교사의 세 집단 모두 교육실행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15>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전혀 그렇지 않다	11 (1.0%)	1 (0.2%)	1 (0.5%)
그렇지 않다	61 (5.4%)	18 (2.8%)	5 (2.5%)
그렇다	680 (60.6%)	417 (65.3%)	115 (57.5%)
매우 그렇다	381 (33.6%)	203 (31.8%)	79 (39.5%)

〈표 16〉 대상별 인권교육의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자	0 (0.0%)	10 (1.6%)	306 (48.1%)	322 (50.3%)
	교사	0 (0.0%)	3 (1.5%)	92 (46.0%)	105 (52.5%)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0 (0.0%)	2 (1.0%)	82 (41.0%)	116 (58.0%)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자	0 (0.0%)	6 (0.9%)	321(50.2%)	313 (48.9%)

⑦ 의사결정 시 보호자(부모)의 태도에 관한 인식 수준 (아동, 보호자)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평균 3.3334, 보호자 3.2612로 높은 수준에서 존중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문항을 살펴보면, ‘나의 보호자(부모)는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준다’, ‘나의 보호자(부모)는 진학할 상급학교(중,고등,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희망학교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나의 보호자(부모)는 나의 진로, 미래직업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나의 보호자(부모)는 나의 학교 정규 교육 외 교육(학원, 과외 등)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의 총 4개 문항으로 보호자가 인식하는 의사결정 존중태도보다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

응답자	빈도	평균	표준편차
아동 (n=1,179)	1,169	3.3334	.57895
보호자 (n=649)	641	3.2612	.42717

## ⑧ 학교에서의 존중 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

학교에서의 존중경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 교사의 인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교 규칙 제정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학습과 수련회 등에 대한 의사 표현과 참여 결정권, 급식 메뉴나 질에 대한 의견 존중, 학내 소식지 내용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는 경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20.4%가 ‘예’라는 인식 수준을 보였지만, 교사의 경우 ‘2.0%’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또한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문항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8.2%가 ‘예’라고 인식했으나, 교사의 응답율은 2.5%였다. 교사 집단이 존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존중 경험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와 ‘학교 안에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나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 집단이 인식하는 수준에 비해 아동·청소년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생보다 더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존중경험

항 목	빈도(%)	
	아동 (n=1,179)	교사 (n=200)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928 (79.9)	186 (93.0)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95 (8.2)	5 (2.5)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236 (20.4)	4 (2.0)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96 (16.9)	31 (15.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1040 (89.3)	189 (94.5)
창의적 체험활동(봉사, 동아리 등),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등은 내가 희망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1047 (89.6)	192 (96.0)
학교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의 활동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852 (73.3)	165 (82.5)
학교는 급식 메뉴나 음식의 질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한다.	713 (61.4)	169 (84.5)
학교 신문이나 소식지 등의 내용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만들 수 있다.	651 (56.1)	147 (73.5)
학교 안에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나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	840 (72.5)	110 (55.0)
학교 내에 학교 폭력 등에 대한 고민을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80 (84.3)	185 (92.5)

### ㉑ 아동·청소년의 쉼 권리와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

아동·청소년의 쉼 권리와 놀 권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충분히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가 48.5%, ‘매우 그렇다’가 23.2%로 전체 응답의 71.7%가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경우는 ‘그렇다’가 44.9%, ‘매우 그렇다’가 11.5%로 대체로 충분히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인식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교사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혀 그렇지 않다’ 12.0%, ‘그렇지 않다’가 47.5%로 전체 응답의 59.5%가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쉬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와 달리 조사 대상의 과반을 넘는 응답자가 아동이 충분히 쉬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아동 놀 권리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렇다’가 46.0%, ‘매우 그렇다’가 23.1% 전반적으로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그렇다’가 42.7%, ‘매우 그렇다’가 8.9%로 응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다’가 44.1%로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3%와 51.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교사의 경우에는 쉼 권리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집단과 보호자 집단과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이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9.7%, ‘그렇지 않다’가 52.3%로 전체 응답의 62.0%가 아동·청소년이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이 충분히 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교사 집단이 인식하는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72.6%, 보호자 70.7%, 교사 78.2%가 ‘쉬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청소년 48.9%, 보호자 58.9%, 교사 58.9%로 세 집단 모두 ‘학원(방과후 학교, 학습지, 과외 등)’을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 높은 응답률도 세 집단 모두 ‘학교와 학원의 숙제가 많아서’로 각각 17.1%, 16.2%, 20.7%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모두 아동이 충분히 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학업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반대’로 인해 충분히 놀지 못한다는 응답이 12.9%였으나 학부모의 경우 2.6%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9〉 아동청소년의 쉼 권리에 대한 인식

휴식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전혀 그렇지 않다	61 (5.2%)	29 (4.5%)	24 (12.0%)
그렇지 않다	267 (23.0%)	251 (39.1%)	95 (47.5%)
그렇다	564 (48.5%)	288 (44.9%)	64 (32.0%)
매우 그렇다	270 (23.2%)	74 (11.5%)	17 (8.5%)

〈표 20〉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전혀 그렇지 않다	56 (4.8%)	27 (4.2%)	19 (9.7%)
그렇지 않다	302 (26.1%)	282 (44.1%)	102 (52.3%)
그렇다	533 (46.0%)	273 (42.1%)	54 (27.7%)
매우 그렇다	267 (23.1%)	57 (8.9%)	20 (10.3%)

〈표 21〉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쉬 수 있는 시간의 부족 (학과공부, 숙제, 학원 등)	247 (72.6%)	196 (70.7%)	93 (78.2%)
쉬 수 있는 공간의 부족 (가정내 독립된 공간 등)	21 (6.2%)	11 (3.9%)	1 (0.8%)
쉬는 시간과 방법에 대한 부모님/선생님/어른들과의 의견차이	38 (11.2%)	46 (16.4%)	13 (10.9%)
어떻게 쉬는 것이 충분히 쉬는 것인지 잘 몰라서	34 (10.0%)	25 (8.9%)	12 (10.1%)

〈표 22〉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학교와 학원의 숙제가 많아서	69 (17.1%)	50 (16.2%)	25 (20.7%)
학원(방과후 학교, 학습지, 과외 등)를 가야해서	197 (48.9%)	182 (58.9%)	70 (57.9%)
놀 수 있는 장소의 부족	16 (4.0%)	33 (10.7%)	7 (5.8%)
보호자의 반대	52 (12.9%)	8 (2.6%)	8 (6.6%)
용돈이 부족해서	25 (6.2%)	1 (0.3%)	1 (0.8%)
함께 놀 사람이 없어서	22 (5.5%)	12 (3.9%)	1 (0.8%)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몰라서	22 (5.5%)	23 (7.4%)	9 (7.4%)

⑩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인식 수준

학교폭력 경험 시 조치할 수 방법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래 <표 23>와 같이 ‘알고 있다’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폭력 발생 시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90.3%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지도가 긴급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실시한다’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인식율을 보였다. 교사는 세 집단 중 학교 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평균 90% 이상의 높은 인식율을 보이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표 23〉 학교폭력 경험 시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의 비율

항목	빈도 (%)			
	아동	보호자	교사	전체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과 교사는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한다.	1044 (90.3%)	593 (93.8%)	195 (97.5%)	1832 (92.2%)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972 (83.9%)	589 (93.0%)	196 (98.0%)	1757 (88.2%)
학교 안의 학교폭력 담당부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901 (77.7%)	541 (85.7%)	191 (95.5%)	1633 (82.1%)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지도가 긴급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681 (58.9%)	425 (67.5%)	171 (85.5%)	1277 (64.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회의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814 (70.4%)	501 (79.4%)	191 (95.5%)	1506 (75.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취한다.	875 (75.6%)	521 (82.6%)	193 (96.5%)	1589 (79.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592 (51.3%)	427 (67.7%)	178 (89.0%)	1197 (60.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보호자(부모)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갖는다.	694 (60.1%)	416 (66.0%)	169 (84.5%)	1279 (64.4%)

## ⑪ 아동 권리 인식 수준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아동·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꼽은 것은 19.8%로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였으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18.0%,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14.8%를 나타냈다. 보호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는 28.7%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였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24.3%,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18.7%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44.0%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했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27.0%,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14.0%로 꼽았다. 세 집단 모두에게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보호자 집단과 교사 집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의 비율 순위마저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로 25.6%,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5.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5%로 조사되었다. 보호자의 경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8.1%로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는 권리’를, 17.0%로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29.0%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로 인식했으며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는 권리’가 16.0%,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13.5%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들 중 하나라고 인식했으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두 집단과 다르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표 24〉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59 (13.7%)	119 (18.7%)	28 (14.0%)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5 (2.2%)	3 (0.5%)	1 (0.5%)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08 (18.0%)	183 (28.7%)	88 (44.0%)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14 (1.2%)	11 (1.7%)	0 (0.0%)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는 권리	60 (5.2%)	27 (4.2%)	6 (3.0%)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	229 (19.8%)	11 (1.7%)	2 (1.0%)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43 (12.3%)	20 (3.1%)	1 (0.5%)
교육받을 권리	61 (5.3%)	92 (14.4%)	12 (6.0%)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8 (7.6%)	17 (2.7%)	8 (4.0%)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71 (14.8%)	155 (24.3%)	54 (27.0%)

〈표 25〉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3 (3.0%)	18 (2.9%)	12 (6.0%)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89 (8.1%)	22 (3.5%)	9 (4.5%)
성장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36 (3.3%)	18 (2.9%)	7 (3.5%)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63 (5.7%)	38 (6.0%)	8 (4.0%)
안전한 장소에서 놀 수 있는 권리	125 (11.4%)	114 (18.1%)	32 (16.0%)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	281 (25.6%)	107 (17.0%)	58 (29.0%)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48 (13.5%)	63 (10.0%)	20 (10.0%)
교육받을 권리	13 (1.2%)	8 (1.3%)	2 (1.0%)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71 (15.6%)	74 (11.7%)	27 (13.5%)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37 (12.5%)	168 (26.7%)	25 (12.5%)

⑫ 일상생활 경험에서의 권리 인식 수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권리를 인식하는 수준의 점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봄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대한 권리 인식과 민감도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되었다.

아래의 〈표 26〉는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모두 동일한 8가지 상황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성훈이는 더 이상 집 앞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되었다. 놀이터를 유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놀이터를 없애

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평균 2.79로, 보호자 2.84, 교사 2.94로 아동의 권리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그 외 7개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집단이 보호자, 교사 집단에 비해 권리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윤서의 부모님은 가끔씩 윤서와 친구들이 주고 받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 부모님은 요즘 아이들의 단체톡방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와 같이 사생활 보장에 관한 권리인식, ‘길을 가던 중 부모로 보이는 어른이 어린이를 세워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등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민감도는 보호자, 교사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6〉 일상생활경험에서 권리인식 수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훈이는 더 이상 집 앞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되었다. 놀이터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아동	1,164	2.79	0.64
	보호자	641	2.84	0.64
	교사	200	2.94	0.60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아영이는 갑자기 온몸이 간지러워졌다. 카레 속에 들어갔던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	1,163	2.87	0.79
	보호자	641	2.79	0.70
	교사	200	2.81	0.76
민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의 결정 내용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게시물 삭제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아동	1,163	3.15	0.74
	보호자	638	2.99	0.61
	교사	200	3.02	0.60
수빈이는 학교를 다녀온 후 집에서 쉬거나 친구와 놀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은 학원에 가야한다고 한다.	아동	1,155	2.90	0.68
	보호자	636	2.57	0.55
	교사	200	2.73	0.52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윤서의 부모님은 가끔씩 윤서와 친구들이 주고 받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 부모님은 요즘 아이들의 단체톡방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아동	1,158	3.10	0.78
	보호자	636	2.63	0.60
	교사	200	2.65	0.62
길을 가던 중 부모로 보이는 어른이 어린이를 세워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등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아동	1,163	3.12	0.75
	보호자	629	2.66	0.62
	교사	200	2.80	0.65
중학교 3학년 선회는 좋은 반장을 뽑았다. 집에 가는 길에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보고 어린이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	1,159	2.45	0.90
	보호자	637	2.23	0.68
	교사	200	2.20	0.73
우리 반 학생들은 과학수업 후 실험도구를 정리하고 교실로 이동하느라 화장실을 갈 수 없었다. 다음 수업이 시작된 뒤 한 명씩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한다.	아동	1,159	3.20	0.67
	보호자	638	3.10	0.59
	교사	200	3.02	0.64

### ⑬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도 9.3%가 답해 아동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60.5%가 체벌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경우는 38.1%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교육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26.5%였다. 아동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집단도 전체 응답자의 64.6%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아동청소년 집단에 비해 ‘교육 목적으로서의 체벌’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경우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의 응답이 64.5%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체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체벌에 대해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교육적 목적에 기대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집단은 체벌의 교육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호자에 의한 보호아동의 체벌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53.5%, 보호자 35.3%, 교사 15.5%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31.0%, 보호자 31.3%로 두 집단은 비슷한 추이였으나 교사는 53.5%로 교사 집단이 체벌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상별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교사에 의한 체벌에 대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에 8.5%의 응답율을 보였지만 보호자에 의한 체벌에 대해서는 약 두 배 가까이 되는 15.5%가 ‘잘못에 상응한 벌’로서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자신에 의한 체벌보다는 보호자에 의한 보호아동의 체벌에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452 (39.4%)	227 (35.4%)	129 (64.5%)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587 (51.2%)	244 (38.1%)	17 (8.5%)
교육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7 (9.3%)	170 (26.5%)	54 (27.0%)

〈표 28〉 보호자의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

보호자가 보호아동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355 (31.0%)	200 (31.3%)	107 (53.5%)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614 (53.5%)	225 (35.3%)	31 (15.5%)
교육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8 (15.5%)	213 (33.4%)	62 (31.0%)

⑭ 대상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인식 수준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57.6%, 보호자 68.4%, 교사 69.5%가 ‘잘 지켜주고 있다’ 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의 응답이 22.8%로 세 집단 중 교사의 학생인권 존중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 의한 보호아동(자녀)의 인권 존중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45.7%가 ‘잘 지켜주고 있다’ 고 응답하였고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는 43.2%로 전체 응답자의 88.9%가 보호자의 인권존중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9〉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인식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53 (4.6%)	8 (1.3%)	1 (0.5%)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173 (15.0%)	144 (22.6%)	28 (14.0%)
잘 지켜주고 있다	666 (57.6%)	435 (68.4%)	139 (69.5%)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264 (22.8%)	49 (7.7%)	32 (16.0%)

〈표 30〉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인식

보호자(부모)는 보호아동(자녀)의 인권을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빈도 (%)		
	아동청소년 (n=1,179)	보호자 (n=649)	교사 (n=200)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24 (2.1%)	6 (0.9%)	1 (0.5%)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104 (9.0%)	130 (20.2%)	50 (25.0%)
잘 지켜주고 있다	527 (45.7%)	432 (67.3%)	136 (68.0%)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499 (43.2%)	74 (11.5%)	13 (6.5%)

⑮ 폭력, 우울, 심리적 위기상황을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 수준

폭력, 우울이나 심리적 위기상황을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과 이용검험 유무에 대한 집단별 조사의 결과는 아래 〈표 31〉, 〈표 32〉, 〈표 33〉와 같다.

세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위기상황 경험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경우 학교 전담경찰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아동·청소년 77.8%, 보호자 77.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세 집단의 응답율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교사의 인식 수준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전담경찰관을 ‘이용해 본 적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80.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높은 편 임에 비해 실제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학교 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신고센터의 이용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이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 밖 제도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경우는 위기상황 경험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를 이용한 경험이 55.0%, 교내 인권부 혹은 학교폭력담당 교사를 이용해본 경험이 48.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밖의 조치에 대한 이용 경험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사의 경우 대체로 교내의 조치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대처행동 인식과 이용경험 비율

	빈도(%)	
	인식	이용
교내 인권부 선생님/ 학교폭력담당 선생님	739 (66.0)	166 (15.2)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801 (71.8)	162 (15.0)
학교전담경찰관	867 (77.8)	207 (80.9)
학교폭력신고센터	828 (74.1)	70 (19.1)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542 (48.6)	135 (12.4)
1388 청소년전화	701 (63.7)	71 (6.6)
학교폭력SOS지원단	518 (46.6)	126 (1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57 (68.5)	38 (3.5)
온라인상담센터	545 (49.0)	154 (14.2)
정신건강관련기관	587 (53.1)	35 (3.3)

〈표 32〉 보호자의 인권침해 대처행동 인식

	빈도(%)	
	인식	이용
교내 인권부 선생님/ 학교폭력담당 선생님	418 (68.2)	39 (6.9)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397 (66.3)	75 (13.1)
학교전담경찰관	469 (77.0)	28 (5.0)
학교폭력신고센터	400 (66.6)	61 (10.7)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222 (36.8)	21 (3.7)
1388 청소년전화	378 (63.3)	49 (8.6)
학교폭력SOS지원단	206 (33.9)	20 (3.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4 (60.8)	59 (10.3)
온라인상담센터	314 (51.8)	24 (4.3)

〈표 33〉 교사의 인권침해 대처행동 인식

	빈도(%)	
	인식	이용
교내 인권부 선생님/ 학교폭력담당 선생님	198 (99.0)	96 (48.0)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186 (93.0)	110 (55.0)
학교전담경찰관	197 (98.5)	43 (21.5)
학교폭력신고센터	175 (87.5)	36 (18.0)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145 (72.5)	24 (12.0)
1388 청소년전화	157 (78.5)	26 (13.0)
학교폭력SOS지원단	128 (64.0)	25 (12.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9 (74.5)	31 (15.5)
온라인상담센터	158 (79.0)	31 (15.5)

⑩ 아동결핍지수

아동 결핍지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결핍에 관한 14개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한 후, ‘아니오’의 응답이 1개 이하인 경우는 비결핍, ‘아니오’의 응답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결핍으로 처리한 결과, 〈표 3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결핍이 621(53.5%), 결핍이 539(46.5%)로 나타났다.

〈표 34〉 아동청소년 결핍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빈도	백분율(%)
비결핍(0-1)	621	53.5
결핍(2-14)	539	46.5
합계	1160	100.0

## ⑰ 학교 특성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의 특성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 35>와 같다. ‘교사들은 서로 가족처럼 느낀다’, ‘업적 위주의 경쟁보다는 교사들 간의 팀워크나 협동이 강조된다’, ‘학교장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등 교사들 간의 관계와 학교 운영 절차와 문화, 학교장의 리더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측정은 ‘매우 일치한다’ 1점, ‘대체로 일치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4점,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5점으로 리커트 척도이며, 응답한 결과 평균 2.74 로 교사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보통이다’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교사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인식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교사 (n=200)	198	2.7466	.45102	.03205

## ⑱ 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아동·청소년인권 인식 차이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의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실태를 조례가 있는 A, B, C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조례의 유무가 아동의 권리인식과 존중경험, 일상에서의 권리상황 인식, 차별 및 체벌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의 조례 제정의 유무보다는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권교육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 2) 아동, 보호자, 교사 간 인권인식 차이 분석

#### ① 인권 인식 차이비교

인권 인지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6>와 같다. 분석결과 인권 인지도에 있어서는 아동(M=1.75), 보호자(M=2.15), 교사(M=2.38)로 나타나서 집단 간 인권 인지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F=252.605$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 인지도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동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1.93$ ), 보호자( $M=2.30$ ), 교사( $M=2.50$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아동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11.489$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있어서는 아동( $M=1.97$ ), 보호자( $M=2.37$ ), 교사( $M=2.48$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아동복지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22.932$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는 아동( $M=1.59$ ), 보호자( $M=2.18$ ), 교사( $M=2.76$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생인권조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428.533$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있어서는 아동( $M=1.63$ ), 보호자( $M=1.92$ ), 교사( $M=2.25$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93.215$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시에 있어서는 아동( $M=1.40$ ), 보호자( $M=1.65$ ), 교사( $M=1.55$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아동친화도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34.165$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교사, 보호자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서는 아동( $M=2.01$ ), 보호자( $M=2.44$ ), 교사( $M=2.75$ )로 나타나서 집단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65.420$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인권인지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인권인지도에 대한 그룹 간 평균 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258.727$ ,  $p<.001$ .

〈표 36〉 인권 인지도 차이비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a)	보호자(b)	교사(c)		
아동권리	1.93 (0.66)	2.30 (0.61)	2.50 (0.58)	111.489***	a<b<c
아동복지법	1.97 (0.62)	2.37 (0.57)	2.48 (0.56)	122.932***	a<b<c
학생인권조례	1.59 (0.61)	2.18 (0.63)	2.76 (0.46)	428.533***	a<b<c
유엔아동권리협약	1.63 (0.66)	1.92 (0.67)	2.25 (0.68)	93.215***	a<b<c
아동친화도시	1.40 (0.56)	1.65 (0.69)	1.55 (0.63)	34.165***	a<c<b
국가인권위원회	2.01 (0.70)	2.44 (0.59)	2.75 (0.46)	165.420***	a<b<c
인권 인지도	1.75 (0.46)	2.15 (0.47)	2.38 (0.39)	252.605***	a<b<c

\*\*\* p<.001

## ② 인권지식점수 차이비교

인권지식점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7>와 같다. 분석결과 인권지식점수에 있어서는 아동(M=2.27), 보호자(M=2.86), 교사(M=3.90)로 나타나서 집단 간 인권지식점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55.753,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지식점수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에 있어서는 아동(M=0.15), 보호자(M=0.39), 교사(M=0.59)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36.449,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에 있어서는 아동(M=0.71), 보호자(M=0.77), 교사(M=0.82)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한국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7.338, p<.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선생님 등 성인이 아동을 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에 있어서는 아동(M=0.82), 보호자(M=0.83), 교사(M=0.96)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교에서 선생님 등 성인이 아동을 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2.598,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에 있어서는 아동(M=0.10), 보호자(M=0.29), 교사(M=0.79)로 나타나서 집단 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312.376,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에 있어서는 아동(M=0.51), 보호자(M=0.64), 교사(M=0.75)로 나타나서 집단 간 나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8.665,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인권지식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인권지식점수에 대한 그룹 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8.576,  $p < .001$ .

〈표 37〉 인권지식점수 차이비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a)	보호자(b)	교사(c)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	0.15 (0.35)	0.39 (0.49)	0.59 (0.49)	136.449***	a<b<c
한국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0.71 (0.45)	0.77 (0.42)	0.82 (0.39)	7.338**	a<b<c
학교에서 선생님 등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0.82 (0.38)	0.83 (0.38)	0.96 (0.20)	12.598***	a,b<c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0.10 (0.30)	0.29 (0.45)	0.79 (0.41)	312.376***	a<b<c
나는 아동이 학대 받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알고 있다	0.51 (0.50)	0.64 (0.48)	0.75 (0.44)	28.665***	a<b<c
인권지식점수	2.27 (1.21)	2.86 (1.43)	3.90 (1.13)	155.753***	a<b<c

\*\* p<.01, \*\*\* p<.001

### ③ 아동청소년권리지식 차이비교

아동청소년권리지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8〉와 같다. 분석결과 아동청소년권리지식에 있어서는 아동(M=3.52), 보호자(M=3.40), 교사(M=3.58)로 나타나서 집단 간 아동청소년권리지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1.679,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권리지식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M=3.63), 보호자(M=3.63), 교사(M=3.84)로 나타나서 집단 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3.418,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복장 선택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M=3.42), 보호자(M=2.97), 교사(M=3.21)로 나타나서 집단 간 외모, 복장 선택의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F=103.621$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44$ ), 보호자( $M=3.25$ ), 교사( $M=3.42$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정보 접근의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4.109$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40$ ), 보호자( $M=3.35$ ), 교사( $M=3.53$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교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6.595$ ,  $p<.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정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49$ ), 보호자( $M=3.30$ ), 교사( $M=3.49$ )로 나타나서 집단 간 국가와 정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1.373$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권에 있어서는 아동( $M=3.44$ ), 보호자( $M=3.27$ ), 교사( $M=3.62$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종교권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5.551$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치활동에의 참여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57$ ), 보호자( $M=3.52$ ), 교사( $M=3.70$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생 자치활동에의 참여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8.679$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결성과 활동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54$ ), 보호자( $M=3.40$ ), 교사( $M=3.57$ )로 나타나서 집단 간 동아리 결성과 활동의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4.773$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40$ ), 보호자( $M=3.15$ ), 교사( $M=3.33$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4.574$ ,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70$ ), 보호자( $M=3.71$ ), 교사( $M=3.79$ )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F=2.651, p>.05$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와 처벌시 합리적 절차와 규정에 근거함에 있어서는 아동( $M=3.52$ ), 보호자( $M=3.57$ ), 교사( $M=3.72$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징계와 처벌시 합리적 절차와 규정에 근거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0.491,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51$ ), 보호자( $M=3.54$ ), 교사( $M=3.65$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5.416, p<.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 $M=3.68$ ), 보호자( $M=3.58$ ), 교사( $M=3.73$ )로 나타나서 집단 간 진로 선택의 권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0.217,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된 후 교정된 아동청소년권리지식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권리지식 수준에 대한 그룹 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23.158, p<.001$ .

외모, 복장선택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국가와 정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동아리 결정과 활동의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진로선택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보호자와 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아동·청소년 권리지식은 교사가 가장 높고 아동·청소년, 보호자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대상의 아동·청소년권리와 관련된 교육과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8〉 아동청소년권리지식 차이비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a)	보호자(b)	교사(c)		
차별받지 않을 권리	3.63 (0.54)	3.63 (0.54)	3.84 (0.37)	13.418***	a,b<c
외모, 복장 선택의 권리	3.42 (0.63)	2.97 (0.66)	3.21 (0.65)	103.621***	b<c<a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a)	보호자(b)	교사(c)		
정보 접근의 권리	3.44 (0.56)	3.25 (0.57)	3.42 (0.57)	24.109****	b<a,c
학교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3.40 (0.61)	3.35 (0.57)	3.53 (0.54)	6.595**	a,b<c
국가와 정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3.49 (0.61)	3.30 (0.63)	3.49 (0.62)	21.373****	b<a,c
종교권	3.44 (0.68)	3.27 (0.66)	3.62 (0.55)	25.551****	b<a<c
학생 자치활동에의 참여 권리	3.57 (0.56)	3.52 (0.52)	3.70 (0.47)	8.679***	a,b<c
동아리 결성과 활동의 권리	3.54 (0.58)	3.40 (0.58)	3.57 (0.52)	14.773****	b<a,c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3.40 (0.74)	3.15 (0.66)	3.33 (0.69)	24.574****	b<a,c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70 (0.53)	3.71 (0.47)	3.79 (0.41)	2.651	a,b<c
징계와 처벌시 합리적 절차와 규정에 근거함	3.52 (0.62)	3.57 (0.52)	3.72 (0.46)	10.491****	a,b<c
자신을 변호할 권리	3.51 (0.60)	3.54 (0.54)	3.65 (0.53)	5.416**	a,b<c
진로 선택의 권리	3.68 (0.52)	3.58 (0.53)	3.73 (0.47)	10.217****	b<a,c
아동청소년권리지식	3.52 (0.43)	3.40 (0.39)	3.58 (0.38)	21.679****	b<a<c

\*\* p<.01, \*\*\* p<.001

#### ④ 인권교육경험 차이비교

인권교육경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9>와 같다. 분석결과 인권교육경험에 있어서는 아동(M=1.50), 학부모(M=0.48), 교사(M=1.41)로 나타나서 집단 간 인권교육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17.695,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학부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된 후 교정된 인권교육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인권교육경험에 대한 그룹 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인권교육경험 차이비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a)	보호자(b)	교사(c)		
인권교육경험	1.50 (1.52)	0.48 (1.08)	1.41 (1.22)	117.695***	b<a,c

\*\*\* p<.001

#### ⑤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 차이비교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0>와 같다. 분석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아동(M=5.67), 보호자(M=6.34), 교사(M=7.42)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교폭력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55.864,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고발에 있어서는 아동(M=0.90), 보호자(M=0.94), 교사(M=0.98)로 나타나서 집단 간 고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7.943,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열립에 있어서는 아동(M=0.84), 보호자(M=0.93), 교사(M=0.98)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7.262,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조사에 있어서는 아동(M=0.78), 보호자(M=0.86), 교사(M=0.96)로 나타나서 집단 간 학교폭력조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3.003,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조치실시에 있어서는 아동(M=0.59), 보호자(M=0.67), 교사(M=0.86)로 나타나서 집단 간 긴급조치실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9.190,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실시에 있어서는 아동(M=0.70), 보호자(M=0.79), 교사(M=0.96)로 나타나서 집단 간 보호조치실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33.753,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선도조치실시에 있어서는 아동(M=0.76), 보호자(M=0.83), 교사(M=0.97)로 나타나서 집단 간 선도조치실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5.776,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재심의요구에 있어서는 아동(M=0.51), 보호자(M=0.68), 교사(M=0.89)로 나타나서 집단 간 재심의요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65.219,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는 아동(M=0.60), 보호자(M=0.66), 교사(M=0.85)로 나타나서 집단 간 분쟁조정절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3.179,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된 후 교정된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한 그룹 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 차이비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a)	보호자(b)	교사(c)		
고발	0.90 (0.30)	0.94 (0.24)	0.98 (0.16)	7.943***	a<b<c
학폭위열립	0.84 (0.37)	0.93 (0.25)	0.98 (0.14)	27.262***	a<b<c
학교폭력조사	0.78 (0.42)	0.86 (0.35)	0.96 (0.21)	23.003***	a<b<c
긴급조치실시	0.59 (0.49)	0.67 (0.47)	0.86 (0.35)	29.190***	a<b<c
보호조치실시	0.70 (0.46)	0.79 (0.40)	0.96 (0.21)	33.753***	a<b<c
선도조치실시	0.76 (0.43)	0.83 (0.38)	0.97 (0.18)	25.776***	a<b<c
재심의요구	0.51 (0.50)	0.68 (0.47)	0.89 (0.31)	65.219***	a<b<c
분쟁조정절차	0.60 (0.49)	0.66 (0.47)	0.85 (0.36)	23.179***	a,b<c
학교폭력경험시 취할 수 있는 조치	5.67 (2.43)	6.34 (2.28)	7.42 (1.45)	55.864***	a<b<c

\*\*\*  $p < .001$

⑥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아동권리인식 차이비교

아동권리상황판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와 같다. 분석결과 '성훈이는 더 이상 집 앞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되었다 놀이터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문항에서는 아동(M=2.79), 보호자(M=2.84), 교사(M=2.94)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85,  $p < .05$ ), Scheffe 사후검정결과 아동청소년에 비해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아영이는 갑자기 온 몸이 간지러워졌다. 카레 속에 들어갔던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항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의 결정 내용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게시물 삭제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문항에서는 아동·청소년(M=3.15), 보호자(M=0.74), 교사(M=2.99)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163,  $p < .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보호자와 교사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빈이는 학교를 다녀온 후 집에서 쉬거나 친구와 놀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은 학원에 가야한다고 한다' 문항에서는 아동(M=2.90), 보호자(M=0.68), 교사(M=2.57)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55.533$ ,  $p<.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보호자, 교사, 아동·청소년 순으로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서의 부모님은 가끔씩 윤서와 친구들이 주고 받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 부모님은 요즘 아이들의 단체톡방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문항에서는 아동( $M=3.10$ ), 보호자( $M=0.78$ ), 교사( $M=2.63$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04.575$ ,  $p<.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보호자와 교사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을 가던 중 부모로 보이는 어른이 어린이를 세워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등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문항에서는 아동( $M=3.12$ ), 보호자( $M=0.75$ ), 교사( $M=2.66$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90.212$ ,  $p<.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보호자, 교사, 아동·청소년 순으로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선회는 좋은 반장을 뽑았다. 집에 가는 길에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보고 어린이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항에서는 아동( $M=2.45$ ), 보호자( $M=0.90$ ), 교사( $M=2.23$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8.423$ ,  $p<.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보호자와 교사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반 학생들은 과학수업 후 실험도구를 정리하고 교실로 이동하느라 화장실을 갈 수 없었다. 다음 수업이 시작된 뒤 한 명씩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한다.’ 문항에서는 아동( $M=3.20$ ), 보호자( $M=0.67$ ), 교사( $M=3.10$ )로 나타나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10.662$ ,  $p<.001$ ), Scheffe 사후검정결과 교사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한 그룹 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보호자, 교사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권인식과 아동·청소년권리지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에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 비해 교사 집단이 높았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1〉 아동권리상황판단 차이비교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성훈이는 더 이상 집 앞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되었다 놀이터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아동(a)	2.79 (0.64)	4.985*	a<c
	보호자(b)	2.84 (0.64)		
	교사(c)	2.94 (0.60)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아영이는 갑자기 온 몸이 간지러워졌다. 카레 속에 들어갔던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a)	2.87 (0.79)	2.373	
	보호자(b)	2.79 (0.70)		
	교사(c)	2.81 (0.76)		
민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의 결정 내용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게시글 삭제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아동(a)	3.15 (0.74)	13.163***	b,c<a
	보호자(b)	2.99 (0.61)		
	교사(c)	3.02 (0.60)		
수빈이는 학교를 다녀온 후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은 학원에 가야한다고 한다.	아동(a)	2.90 (0.68)	55.533***	b<c<a
	보호자(b)	2.57 (0.55)		
	교사(c)	2.73 (0.52)		
윤서의 부모님은 가끔씩 윤서와 친구들이 주고 받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 부모님은 요즘 아이들의 단체톡방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아동(a)	3.10 (0.78)	104.575***	b,c<a
	보호자(b)	2.63 (0.60)		
	교사(c)	2.65 (0.62)		
길을 가던 중 부모로 보이는 어른이 어린이를 세워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등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아동(a)	3.12 (0.75)	90.212**	b<c<a
	보호자(b)	2.66 (0.62)		
	교사(c)	2.80 (0.65)		
중학교 3학년 선희는 좋은 반장을 뽑았다. 집에 가는 길에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보고 어린이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동(a)	2.45 (0.90)	18.423***	b,c<a
	보호자(b)	2.23 (0.68)		
	교사(c)	2.20 (0.73)		
우리 반 학생들은 과학수업 후 실험도구를 정리하고 교실로 이동하느라 화장실을 갈 수 없었다. 다음 수업이 시작된 뒤 한 명씩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한다.	아동(a)	3.20 (0.67)	10.662***	c<a
	보호자(b)	3.10 (0.59)		
	교사(c)	3.02 (0.64)		

\* p<.05, \*\* p<.01, \*\*\* p<.001

## ⑦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비교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와 같다. 분석결과 차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아동(M=3.42), 보호자(M=3.32), 교사(M=3.51)로 나타나서 집단 간 차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0.793,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인식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에 있어서는 아동(M=2.80), 보호자(M=2.45), 교사(M=2.57)로 나타나서 집단 간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52.403,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교사, 아동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도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에 있어서는 아동(M=3.06), 보호자(M=2.83), 교사(M=3.02)로 나타나서 집단 간 ‘아동청소년도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7.584,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에 있어서는 아동(M=3.18), 보호자(M=3.09), 교사(M=3.29)로 나타나서 집단 간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1.180,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있어서는 아동(M=3.43), 보호자(M=3.27), 교사(M=3.38)로 나타나서 집단 간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6.049,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된다’에 있어서는 아동(M=3.60), 보호자(M=3.61), 교사(M=3.80)로 나타나서 집단 간 ‘가정형편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2.811,  $p<.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있어서는 아동(M=3.58), 보호자

(M=3.55), 교사(M=3.68)로 나타나서 집단 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4.198,  $p < .05$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있어서는 아동(M=3.46), 보호자(M=3.28), 교사(M=3.43)로 나타나서 집단 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8.345,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에 있어서는 아동(M=3.43), 보호자(M=3.28), 교사(M=3.54)로 나타나서 집단 간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7.690,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에 있어서는 아동(M=3.50), 보호자(M=3.50), 교사(M=3.73)로 나타나서 집단 간 ‘부모님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4.407,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신념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에 있어서는 아동(M=3.45), 보호자(M=3.41), 교사(M=3.70)로 나타나서 집단 간 ‘정치적 신념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0.034,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된다’에 있어서는 아동(M=3.56), 보호자(M=3.44), 교사(M=3.70)로 나타나서 집단 간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1.452,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에 있어서는 아동(M=3.54), 보호자(M=3.42), 교사(M=3.66)로 나타나서 집단 간 ‘나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6.290,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보호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아동,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에 있어서는 아동(M=3.58), 보호자(M=3.58), 교사(M=3.76)로 나타나서 집단 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9.032,  $p < .001$ ),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에 있어서는 아동(M=3.50), 보호자(M=3.56), 교사(M=3.76)로 나타나서 집단 간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691, p<.001),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비난은 명백한 차별이다’에 있어서는 아동(M=3.58), 보호자(M=3.61), 교사(M=3.74)로 나타나서 집단 간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비난은 명백한 차별이다’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539, p<.01), Duncan 사후검정결과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차별인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한 그룹 간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146, p<.001.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간 차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교사 집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네 항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보호자 집단과 교사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비교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니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a)	2.80(0.75)	52.403***	b<c<a
	보호자(b)	2.45(0.63)		
	교사(c)	2.57(0.59)		
아동청소년도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아동(a)	3.06(0.66)	27.584***	b<a,c
	보호자(b)	2.83(0.58)		
	교사(c)	3.02(0.54)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a)	3.18(0.62)	11.180***	b<a<c
	보호자(b)	3.09(0.44)		
	교사(c)	3.29(0.51)		
모든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아동(a)	3.43(0.56)	16.049***	b<a,c
	보호자(b)	3.27(0.52)		
	교사(c)	3.38(0.55)		
가정형편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된다	아동(a)	3.60(0.55)	12.811***	a,b<c
	보호자(b)	3.61(0.52)		
	교사(c)	3.80(0.41)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아동(a)	3.58(0.57)	4.198*	a,b<c
	보호자(b)	3.55(0.53)		
	교사(c)	3.68(0.5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사람들도 우리 나라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동(a)	3.46(0.62)	18.345***	b<a,c
	보호자(b)	3.28(0.62)		
	교사(c)	3.43(0.67)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a)	3.43(0.62)	17.690***	b<a<c
	보호자(b)	3.28(0.61)		
	교사(c)	3.54(0.57)		
부모님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a)	3.50(0.60)	14.407***	a,b<c
	보호자(b)	3.50(0.55)		
	교사(c)	3.73(0.46)		
정치적 신념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동(a)	3.45(0.59)	20.034***	a,b<c
	보호자(b)	3.41(0.54)		
	교사(c)	3.70(0.46)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된다	아동(a)	3.56(0.54)	21.452***	b<a<c
	보호자(b)	3.44(0.53)		
	교사(c)	3.70(0.47)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검정
나이에 따라 차별받아서 안 된다	아동(a)	3.54(0.59)	16.290***	b<a<c
	보호자(b)	3.42(0.56)		
	교사(c)	3.66(0.51)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a)	3.58(0.57)	9.032***	a,b<c
	보호자(b)	3.58(0.52)		
	교사(c)	3.76(0.43)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아동(a)	3.50(0.62)	17.691***	a,b<c
	보호자(b)	3.56(0.54)		
	교사(c)	3.76(0.43)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비난은 명백한 차별이다	아동(a)	3.58(0.57)	7.539**	a,b<c
	보호자(b)	3.61(0.51)		
	교사(c)	3.74(0.44)		
차별에 대한 인식	아동(a)	3.42(0.42)	20.793***	b<a<c
	보호자(b)	3.32(0.38)		
	교사(c)	3.51(0.34)		

\* p<.05, \*\* p<.01, \*\*\* p<.001

### 3) 아동의 경제수준과 결핍지수에 따른 아동의 인권교육경험/권리인식수준/ 아동의 권리인식수준이 발달 산물에 미치는 영향

#### ① 아동권리 인식 - 발달산물 간 상관관계

아동의 권리인식과 아동의 발달산물의 하위척도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의 권리인식 수준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평균 3.4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은 총점 16점 중 평균 10.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평균 3.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핍지수는 총점 15점 중 평균 1.8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존중경험은 총점 22점 중 평균 19.48로 나타나 학교에서 긍정적인 존중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태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3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보호자가 존중해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의 경우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0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가해 경험에 대한 측정 결과는 평균 1.69로 나타나 아동들이 일 년에 1번 미만의 정서적 가해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아동권리인식과 발달산물과의 관계 분석

	빈도	평균	표준편차
아동권리인식	1,175	3.52	0.43422
차별인식	1,159	3.42	0.41511
사회적바람직성	1,153	10.62	2.85912
친사회성	1,155	3.01	0.45493
결핍	1,160	1.86	2.08283
학교존중경험	1,170	19.48	2.27344
보호자태도	1,169	3.33	0.57895
학교생활	1,173	3.04	0.38002
정서가해	1,148	1.69	0.62743

〈표 44〉 아동의 아동권리 인식 수준과 발달 산물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아동 권리 인식	차별 인식	사회적 바람직 성	친사회 성	결핍 지수	학교 존중 경험	보호자 태도	학교 생활	정서 가해 경험
아동 권리 인식	1.00								
차별 인식	.437**	1.00							
사회적 바람직성	.060*	.141**	1.00						
친사회성	.237**	.319**	.275**	1.00					
결핍 지수	-.104**	-.102**	-.155**	-.176**	1.00				
학교 존중 경험	0.044	.106**	.123**	0.013	-.111**	1.00			
보호자 태도	.218**	.178**	.247**	.243**	-.256**	.111**	1.00		
학교 생활	.289**	.358**	.359**	.385**	-.222**	.197**	.371**	1.00	
정서 가해 경험	-.060*	-.102**	-.295**	-0.036	0.004	-0.038	-.087**	-.143**	1.00

\*  $p < .05$ , \*\*  $p < .01$

〈표 44〉는 아동의 아동권리 인식 수준과 발달 산물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동권리 인식과 차별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0.437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친사회성(.237), 보호자태도(.218), 학교생활긍정인식(.289)과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결핍지수(-.104), 정서가해경험(-.060)은 0.05의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② 결핍 여부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

〈표 45〉 결핍 유무에 따른 아동권리인식과 차별인식의 차이 분석

	결핍	평균(표준편차)	t값	p
아동권리인식	무(n=621)	3.56(.42)	3.249	.001
	유(n=539)	3.48(.44)		
차별인식	무(n=614)	3.44(.43)	1.893	.059
	유(n=537)	3.39(.40)		

〈표 45〉은 결핍 유무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수준 및 차별인식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test의 분석결과이다. 아동권리인식에서 결핍이 없는 아동의 평균값은 3.56으로 결핍이 있는 아동의 평균값인 3.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그러나 차별인식은 결핍이 없는 아동의 평균값 3.44와 결핍이 있는 아동의 평균값 3.39 간에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③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인식에 대해 경제수준이 ‘하’ 인 아동의 평균 3.49로 나타났고, ‘중’ 인 아동의 평균 3.51, ‘상’ 인 아동의 평균은 3.54를 보였다. 차별인식에 대해 경제수준이 ‘하’ 인 아동의 평균 3.48로 나타났고, ‘중’ 인 아동의 평균 3.39로 나타났고, ‘상’ 인 아동의 평균은 3.45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아동권리 인식과 차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권리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차별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6〉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권리인식과 차별인식의 차이 분석

	경제수준	빈도	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정
아동권리인식	상 (a)	429	3.54(.435)	.602	
	중 (b)	634	3.51(.436)		
	하 (c)	87	3.49(.403)		
차별인식	상 (a)	426	3.45(.409)	3.797*	
	중 (b)	628	3.39(.418)		
	하 (c)	87	3.48(.355)		

\* p<.05

④ 경제수준 인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교육경험 분석

경제수준을 상으로 인식한 아동청소년 집단과 하로 인식한 아동청소년 집단의 인권교육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와 같다. 경제수준을 ‘하’로 인식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평균 1.68로 나타났고, ‘상’으로 인식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평균 1.43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횟수에 대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p=.221), ‘하’ 집단의 교육경험횟수의 평균이 ‘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면서 인권교육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을 ‘상’으로 지각한 아동·청소년이 경제수준을 ‘하’로 지각한 아동·청소년에 비해 인권지식이 높았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인권교육경험의 노출이 인권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47〉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의 차이 분석

	경제수준	빈도	평균(표준편차)	t	p
인권교육 경험	상 (a)	429	1.43(1.53)	1.230	.221
	하 (c)	85	1.68(1.73)		

⑤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권리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3>와 같다. 아동권리인식에 대해 학업성적이 ‘하’ 인 아동의 평균 3.46로 나타났고, ‘중’ 인 아동의 평균 3.48로 나타났고, ‘상’ 인 아동의 평균 3.52로 나타났다. 차별인식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하’ 인 아동의 평균 3.39로 나타났고, ‘중’ 인 아동의 평균은 3.39, ‘상’ 인 아동의 평균은 3.4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지각하는 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이 하일 때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후검정 결과 성적이 하인 집단과 중, 상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보다 중, 상인 집단이 더 차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권리인식의 차이 분석

변수	학업성적	빈도	평균(표준편차)	F	사후 검정
아동권리인식	상 (a)	466	3.58(.405)	8.951	
	중 (b)	389	3.48(.453)		
	하 (c)	296	3.46(.436)		
차별인식	상 (a)	464	3.39(.409)	13.986*	c<a,b
	중 (b)	384	3.39(.406)		
	하 (c)	294	3.33(.403)		

\* p<.05

### 3. 제언

첫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적 없음’이 34.0%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보호자의 경우에도 77.2%가 ‘받은 적 없음’으로 답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받은 적 없음’이 24.0%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아직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에 상당수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교육 조례가 있는 A 및 B지역과 조례가 없는 C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조례의 유무가 아동의 권리인식과 존중경험, 일상에서의 권리상황 인식, 차별 및 체벌에 대한 인식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의 조례제정의 유무보다는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권교육의 영향이 더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가능한 학교현장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속에 녹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의 모임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인권교육연구회 등을 통해 교과과정 속에 인권교육을 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직무연수에 일정기간 동안 필수교육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모의 경우에는 NEIS 등을 접속해서 학생정보를 확인할 때 짧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동의 권리인식과 존중경험, 일상에서의 권리상황 인식, 차별 및 체벌에 대한 인식수준 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성숙되면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 세 가지 대상집단 모두 강사의 설명이나 인쇄자료,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한 인권교육의 경험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론 중심의 활동’, ‘역할극 또는 놀이 형태의 교육’ 등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높은 형태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수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의무화는 대상자의 피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방법과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희롱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등 양성평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대상자들의 교육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홍보의 강화이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답자 수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5.7%, 보호자 53.8%, 교사의 63.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였다. 복지부는 2015년 3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2항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9.3%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60.5%가 체벌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경우는 38.1%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교육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26.5%였다. 아동·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집단도 전체 응답자의 64.6%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의 응답이 64.5%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체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체벌 금지논란이 되면서 공론화 되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부모체벌 금지는 별다른 논란 없이 법이 개정되어 전혀 홍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체벌의 법적 금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체벌 금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가정 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3개국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는 시점에 논란이 있었고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국민 인식이 개선될 기회를 상실했다.

또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징계권이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를 학대적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과 이러한 대안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 교사, 부모가 아동·청소년보다 의식이나 인식, 지식 수준이 높았지만 몇 가지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이 부모나 교사보다 더 인식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권리지식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보접근의 권리, 국가와 정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동아리 결성과 활동의 권리, 진로선택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자와 교사 집단보다 훨씬 강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교사 집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네 항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보호자 집단과 교사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인식수준이 아이들의 인식수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인들도 아동·청소년을 통해 배워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아동권리 인식이 아동·청소년발달에 긍정적이다. 아동권리 인식은 친사회성, 보호자태도, 학교생활긍정인식 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결핍지수, 정서가해경험 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권리 인식이 높으면 긍정적 발달산물은 상승하는 반면 부정적 발달산물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양육과 교육이 아동권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 성적이 좋은 경우가 아동권리 인식이 좋은 편이고, 경제수준이 좋은 경우가 아동권리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으면 성적도 좋고, 성적이 좋으면 아동권리 인식이 좋고, 아동권리 인식이 좋으면 발달산물이 좋아지는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아동권리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권리인식은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형태의 아동권리교육으로는 아동권리 인식의 향상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학교 상·별점 제도를 폐지하고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하기로 했으며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부와 머리모양·신발·가방·양말 등을 제한해온 교칙은 학생과 함께 논의해 정하도록 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예처럼 인권교육이외에 정책적 접근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동권리나 인식 수준이 높아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외에 다양한 인권 인식 수준 향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 심층면접 분석

배은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Ⅲ.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 심층면접 분석

배은경 교수(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를 조사함에 있어 아동권리에 관한 경험과 인식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 권리이행의무자(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아동청소년전달체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4회의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1. 연구참여자 정보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참여자들은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 15명, 권리이행의무자(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19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권리주체 아동청소년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

구분	성별	학년	지역
1	여	초6	A시
2	여	초5	A시
3	여	초5	A시
4	여	초6	A시
5	여	초4	A시
6	여	초5	A시
7	남	중3	A시
8	남	중3	D시
9	여	중2	A시
10	남	중1	A시
11	여	중1	A시
12	여	고2	C시
13	여	고1	C시
14	여	학교밖청소년(18세)	C시
15	남	고2	C시

〈표 2〉 권리이행의무자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

구분	성별	연령(세)	근무기관	지역
1	여	46	D초등학교	C시
2	여	30	E중학교	C시
3	여	58	F고등학교	C시
4	남	59	G고등학교	C시
5	남	35	H초등학교	C시
6	여	45	I초등학교	C시
7	여	57	J중학교	C시
8	여	51	K지역아동센터	A시
9	여	48	L지역아동센터	A시
10	남	35	M지역아동센터	A시
11	여	47	N지역아동센터	A시
12	여	51	O지역아동센터	A시
13	남	48	P지역아동센터	A시
14	여	52	Q지역아동센터	A시
15	여	47	R협회	C시
16	여	58	S교육청	C시
17	남	47	T협회	C시
18	여	39	U교육복지센터	C시
19	남	51	V구청	C시

## 2. 권리주체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 아동권리 관련 참여경험 및 인식, 이를 통한 변화

연구참여자들의 아동권리 관련 참여경험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과 지역이 다름에도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아동권리교육이나 아동권리캠프, 아동총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 참여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급과 지역을 넘어 아동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가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초점집단인터뷰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권관련 활동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청소년이 모집된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실제 연구참여 아동청소년들은 인권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주변 친구들에 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 “친구들 혹시 아동권리 이름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공부방(지역아동센터)에서 인권교육할 때”, “(인권)캠프 가서”

“아동총회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서 토론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구요.”

“(C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C시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세우기 위해 만든 단체이고, 100명으로 구성되어서, 전체 구에 있어요. 법적 근거는 C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거기에 있던 것.”

“저도 아동권리는 0000 하면서 밖에 못 들었고 다른 데서는 들어보기가 많지 않아요 친구들도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죠..”

연구참여자들은 아동권리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뚜렷하게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드러났다. 연구참여 아동청소년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늘고, 권리침해 사실 뿐 아니라 권리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나 국제 기준에 대한 지식이 확장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후기 청소년들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던 경험이 나오기도 하였다.

“총회가 진행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현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동권리가 침해되었는데 우리는 침해되었다고만 생각하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엔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를 근거로 해서 이건 아니다라도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는데 거기서 교육도 받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몇 조, 몇 항, 기본권 침해 반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 했던 불편한 점을 이거(아동총회) 활동한 후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도 느끼게 되었고, ‘많은 게 불편했구나’ 이렇게 느껴졌고, 학교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 할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계시는데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들도 다 옛날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인식이 생기니까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들 반대로 안 됐던 건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어이없게 생각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기구 자체도 몰랐고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지도 몰랐는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청소년도 많구나를 느끼면서 저도 같이 가져야하겠다고 느낀 것도 있고, 이제는 어떤 문제를 봐도 청소년 문제를 보게 되면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폭이 전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전에는 부당하면 왜 이리지? 해도 거기서 멈추고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다음 회의 때 어떻게 정책으로 제안해야지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3때까지는 친목? 즐거운 것? 재미있는 느낌으로 활동을 보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하는 것은, 18세 선거권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5,000만명 중 하나인 작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합쳐져서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게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 활동할 때 청소년 주요 쟁점이 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반면, 아동청소년인권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인식 확장이 실제 일상의 변화와는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참여 아동청소년에 따라 인식의 편차가 있었다. 학교에서 평상시 체육복을 입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바뀔 때까지 제안해 변화를 이끌어낸 등의 경험이 있기도 하였지만, 후기 청소년들의 경우 ‘의견을 내는 것에 의의를 두지, 변화는 잘 모르겠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인권이 강조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분위기들이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참여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가면 뭐라고 하니까 그것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고쳐진것도 있고... (연구자: 그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아니면 불편하거나.. 복잡했거나든지?) 그걸 작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안 이뤄져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쳐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변화된 것은 없어요. 느낌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의의를 두지, 변화를 둔 것을 모르겠어요.”

## 2) 성인의 아동권리 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과거에 비하여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성인들의 아동권리 태도에 대하여 연구 참여 아동청소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한 바 있었다. 연구참여 아동청소년들은 주변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부터 놀 권리, 쉼 권리, 참여할 권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거나, 미숙한 아이로 접근하지 않고 나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교사를 만났을 때 등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두발(제한) 없어지는 것을 보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대는 잘 안 지켜지는 거 같고..”

“(학대) 정말 많습니다. 입양가족도 한 명 있고, 집안이 기독교인데 아동학대 가정도 있고. 제 친구인데. 계속 십 몇 년 이상 참으며 자라온 애들도 많아요. 경제권이 없으니까. 삭히고 삭히는 거죠, 결국.”

“친구랑 놀고 싶어요. (연구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근데 안 돼요. (연구자: 왜?) 어리다고..”

“크면 해준대요.”

“학교 내에서 말씀드리면, 월요일미디 회의에 비박기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미디 선생님께서 오셔서 도움 주시고 공약, 교육청 전화해주고,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존중받는 경험이 있어요. 어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부정적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학생이 어떤 공약을 들던, 자기 시험문제 내고 수업하고 문제 없이 직업상으로 다니는 건데, 굳이 시간을 내면서까지 도와주시는 경험이 상당히 존중 받는 경험이 들어요.”

“딱 한 두 명 정도는 있었는데, 인권보다는 자체로 존중해주는 경험이었어요. 저를 아이들에 가두지 않고, 그 자체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요. 미숙하다, 여자애다 이런 프라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너 정말 이거 괜찮게 했다, 이런 칭찬 한마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반면,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보호자라 하더라도 진학을 이유로 학습에 더욱 몰두하기를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인권 담당 교사라 하더라도 예산이나 참여권 등의 민감한 인권 주제와 맞물릴 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경험도 드러났다. 학습과 참여권 등의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권에 익숙한 태도를 보인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에 한계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아동권리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의 권리주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각 학급의 학생회를 통해 나온 안건임에도 교사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였을 때 전체 학생회 선에서 먼저 자기검열이 이루어진 경험도 나타났다.

“피아노 치고 책읽는 것들이 아빠가 국어 선생님인데 완전 저랑 성향이 다르셔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방에 갔다 논 책은 안 읽고 학교에서 다른 것만 갔다 놓고, 저는 과학 관련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잡서라고 이런거 읽지 말고 차라리 고전소설 모음집 그런거 읽으라고...”

“저는 글쓰는 걸 좋아하니까 시쓰고 이런 시간이 많고, 에세이 읽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차라리 이 시간에 강의하나 더 들어라’고 하세요.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글이 되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살짝 자아정체성을 찾아라는 이런 이야기 그런 분위기를 글을 쓸 때는 이제 만약에 아빠가 보시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 같기도 해요.”

“교육감님이 이야기 했었는데 학교예산에 학생 자치활동으로 학교예산에 몇 퍼센트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개가 잘 홍보되지도 않고,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에러가 뜨고 그런 것들을 해서 최근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중략) 어른들이 약간 좀 인식이 아직까진 옛날스러운 점이 있고 저희가 계속 리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쪽 담당 선생님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축제 이런걸 하는데 그 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 규모를 좀 줄였는데 학생회 이런데서 ‘왜 예산이 이것 밖에 없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물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트러블 이런 것도 (선생님과)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계속 불편하다고 한 달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학생회 회의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계속 찼렸어요. 이번에는 그게 안 찼리고 선생님들한테 넘어가서 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걸로 계속 뭐라고 하셔가지고 학생회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 3)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교육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은 의무화되었고, 다양한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제도도 확장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인권교육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참여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나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인식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고, 인권교육이 실행되더라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교사 역시 형식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반면, 지자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UN 아동 보고서 번역캠프 등 다양한 참여경험을 가진 연구참여 아동청소년의 경우,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낼 뿐 달라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이었던 인권 실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도 하였다.

“인권교육 그냥 학교 다닐 때 몇 번 배워봤던 것이 생각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특강에서 외부 선생님이 오셔서 인권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반마다 전자칠판이 있는데 강사분께서 방송실에서 마이크로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시면서 넘겨가면서 설명해주는 방식인데, 애들이 거의 듣지를 않아요. 애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이게 솔직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최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나..”

“(아동권리교육 때) 저희는 선생님들이 다 앞에 계세요 그런데도 저희 학교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 교실에 없고 공부나 숙제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도 ‘알아서 숙제하라’고 하시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오히려 ‘각자 할 일 하라’고 하셔서, 교육은 하는데 정작 저희는 듣지를 않아요.”

“저는 UN 아동 보고서 번역하는 캠프에 저번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권교육 같은 것 1박2일로 하고, 번역했어요. 나누미락. 여기 멤버는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다가 점점 범위 좁혀가지고 아동으로 가는 것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어디서 나와서 관련된 아동권리교육을 했었어요. 그 때는 조금 막연했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으니까. 알고만 넘어갔어요.”

“저는 적게나마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곳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구나, 청소년 인권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권도 중요한 토픽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교내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해 경험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사례들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변화들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건의함이나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만은 인식하지 않았다. 교급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인권이 더욱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혁신학교나 아동청소년인권조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 외에 학교장의 태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등 여러 제도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동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학생회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건의함을 만들었거든요. 전에는 그런 창구가 없어서 엄마한테 부탁해달라, 젊은 선생님에게 이게 아니지 않냐고 따졌었죠.”

“약간 학교가 오래 되고 사립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할까 방안을 고민하다가 친구와 함께 건의함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해요. 온라인 중심 의견 수용하고자 해요. 실질적 가동역할을 제가 해요. 실제 변화는.. 교칙을 변경하는 상황에서는 없고, 간단하게 시설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잘 반영하는 편이에요.”

“제가 주위에서 겪는 사례를 봤는데 117라던가 학교폭력건의함 학교담당 경찰관 이런 거 사용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고, 제 주위에 부류는 자기 혼자 삭히거나 아니면 그냥 담임선생님께 말하면 그게 징계위원회로 이어지거나. 징계위원회가 그러니깐 학생이 그렇게 언급을 해서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말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항상 열렸던 거 같긴 해요. 그러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드러났던 것도 있었고.”

“특히나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학대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쉼터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불량 청소년 집단 모여서 학대 당한 학생을 또 피해 받기도 해요. 구체적인 보호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지 않아요. 쉼터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입소 시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쉼터 같은 곳도 경찰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혁신학교로 지정되었거든요. 학교 제도 면에서 C시가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반영 움직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청소년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고, 실제로 두발 규정, 교복 규정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사립학교 왔더니, 법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직 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회 내에서도 속한 집단이나 위의 최고권력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는, 어른들이 뭘 해준다 건립해준다 확충해준다는 것 아니라 그런 걸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해요.”

#### 4) 아동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제안

아동청소년인권에 있어 연구참여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현실과 국제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연구참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하여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까지 다양한 제안들을 하였다. 우선 권리이행의무자이자 일상에서 아동청소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 및 보호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며, 권리주체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직접적인 관계의 권리이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주민 등 공동체와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인권교육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교육 측면에서는 실습이나 체험 중심의 교육, 인권 지식보다는 인권실행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선생님부터 받아서 자기 자신들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선생님들까지 학생들이 많이 생활화된 곳이 학교이니까. 학생들의 교육과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통합적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랑 교사 관계의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만나는 사람들의 권리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문제였는데 그때 정책이 성 관련인데, 그래서 한국적십자사 인가?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서 위원회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실습 위주여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교에서 들었을 때는 코이카나 다른 단체를 통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경험담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집중하기 쉬웠어요. 권역 캠프 갔을때는 내가 그 보고서를 찾아보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공부가 확실히 되기는 하죠.”

“매번 ppt만 가지고 수업을 하던 교육이 있었는데 그 시민교육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날 한번은 실습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뵈.. 세계문화 이런 거 정말 체험해보고. 이런 거를 외국 강사분 들을 모셔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게 딱 그 한 번인 거예요. 실습.. 그런 외에는 남는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할거면 그 상황에 알맞은 실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기억에도 남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요구하는 이슈들이 정치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힘을 갖추거나, 이를 지원할 정치세력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다. 구체적인 인권 영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같은 초기 청소년의 경우, 놀 권리나 쉼 권리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후기 청소년의 경우, 진로탐색이나 경제권,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훨씬 강하게 드러났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부터 학교밖청소년이 크게 늘고, 학교밖청소년에게는 인권 이슈가 특히 생존과도 직결되는 만큼, 인권 이슈에 있어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국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나 제도를 아동청소년이 이용함에 있어 절차적으로 제한이 없도록 하여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놀고 싶어요. 그런데, 수업이 있어서 빨리 집에 오라고 그래요.”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데 아빠가 개근상을 받아야 한다고 학교에 보내요.”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정치인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을 낸 것을 입법을 시키고, 목적 관련 부서에 통과를 시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할텐데.. 구체적인 행정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정치인, 관직에 사람이 없으니까 딜레마를 겪는 거죠.”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직장. 청소년의 경제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 청소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나 그리고 관련 민간 협회를 통해서 직접 피레이드라던지 서명 운동이라도 대외적으로 개시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알고 있도록. 미국, 중국에서도 저희의 청소년인권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실태는 마음이 아프지만, 타 국가에 비해 정말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학대를 받아 자립을 하고자 하지만, 경제권 보장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당해도 심지어 무서워서 결국 학대를 경험해도 집에 머무르고 있는 수 밖에 없어요. 직접 제 주위 지인 케이스도 봤고, 경찰 관련 당국 관계자 통해 들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대를 당해도 경제권이 없으니,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중략) 청소년에 관해서 법률 상담 지원센터도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소수 관련법을 찾아봤는데 성소수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힘들어 한다 해요.”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바리스타 미술학원 직무와 관련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국비지원 학원 설치 필요할 거 같고 중고등학생 대상 사교육비 지원도 관련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나와서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라는 것..”

“문화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댄스나 보컬 트레이닝을 개설해서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센터, 주민센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받는 제도 절차가 복잡한데 이걸 좀 간소화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는”

“아동 권리에 관해서는 저는 아동들이 처한 현실이나 인생사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 취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고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숨이 담긴 일이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자퇴생으로 인한 차별도 많이 받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고용기피대상이에요.”

### 3. 권리이행의무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에 있어 권리이행의무자로 역할하게 되는 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집단별로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교사 대상

##### ①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 교급이나 혁신학교 유무 등의 차이에서부터 인권관련교육활동이나 모임 참여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우선 학생인권조례 등을 계기로 학교가 아동청소년인권을 과거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이에 따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교사들끼리 인권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보거나, 인권감수성이 증진되어 학교의 일상에서 인권을 고려하여 고민한 경험 등을 하고 있었고, 교직 변경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참여경험들이 쌓이고 있음을 인식한 적도 있었다.

“초등학교는 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급이 올라갈수록 갭이 점점 커지고.”

“거기(중학교)는 일반학교예요. 그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경험한 자율성이 있고, 참여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한 게 있으니까 애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구요, 또 하나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도 편하게 아이들을 대해 주시는 게, 학습을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 눈 맞추거나 얘기하거나 한 마디라도 지나가면서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몸에 베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가정폭력은 하면 안된다는 걸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면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까 라는 게 이전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가정폭력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도와주거나 제재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더 강화가 된 거잖아요, (중략) 저는 사실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받게 된 게 최근 몇 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해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 내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개입해서 하는 건 문제이지만 어떤 사회의 큰 가이드 라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이것이 현실 속에 실현이 되는지, 계속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계인권선언이나, 마련된지 몇 년이예요, 그리고 아동인권선언이 있었지만 솔직히 사문화 됐었던 거죠. 최근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내 생활과 조례가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걸 교사들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에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창의인성교육재단 지원을 받아서 동아리 선생님들끼리 인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 번씩 정도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과목별 선생님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목을 적어왔는데, ‘인간의 권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권 발자국을 찾아서’, ‘일상언어에 드러난 차별적 언어’, ‘착한 여행, 지속가능한 세상’,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뮤지컬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인권’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 아닌데, 일단 교사, 행정관리직, 학부모 등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 생활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진짜 소소한 건데 시설이나 어떤 도구 같은 것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구입을 하거나 이럴 때 어른들의 시각이나 기준으로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라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까? 인권을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과 지낼 때 아이들 입장에서 인권 감수성, 또는 민감성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이런 일상생활에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저희는 되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조문을 들으대면서 너희가 개정하고 싶은 걸 얘기해봐 이르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될 꺼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이들이 다 패스페이스했는데 아이들이 딱 하나 집어낸 게 있었는데 (중략)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모든 법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알고 생활하지 않잖아요, 스킵스킵하고 정말 자신이 불합리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드폰과 이거였어요. 중간놀이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운위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런 경험이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학생인권조례나 공문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애들이 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정말 자기 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만 딱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 거 같아요.”

그러나, 교급에 따라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 연구(김현수 외, 2016)처럼 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을 중시하고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인 경험을 연구참여자들도 하고 있었다. 특히, 인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하여 교사 사회 내부에서도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이라는 말에 대한 학교 사회가 느끼는 부담감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권의 개념과 실행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인권을 바라보는 학교구성원의 시각 차이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도 이어져 교사나 학교장 개개인의 관점과 태도가 아동청소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권리와 책임의 균형은 교사들 안에서도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저는 학교에서 인권과 관련한 경험이라면 학교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게 제일 큰 경험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나 교사들한테나. 인권은 불편하게 하는 말, 잘 얘기할 수 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말로 여겨지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누구의 말이나 고 했을 때 사실 인권은 교사들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딱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말로는 아이들 인권, 인권얘기 하면서도 제가 본 견지에서는 굉장히 인권이라고 하면 긴장하고 놀라고 터부시하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되게 반인권적인... 내가 너희를 교육해야 하는 입장이고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나이 유신, 독재를 겪으면서 사회가 민주적, 인권적이지 않아서 학교가 더디었던 것도 있는 거죠.”

“학교 정문에 딱 들어가면 ‘00구 어린이 인권선언’ 액자가 딱 붙어있어요 저 높이 정도 붙어 있는데, 2년 전에 구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 모집해서 인권 선언을 만들고 그걸 각 학교에 액자를 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물로 걸려있어도 학교의 리더십이 받쳐주지 않고, 사실 교장선생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권 얘기 같은 거 하는 게 불편하거나 하소연하는 듯한 얘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있다는 걸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학생들도 모르고 특히나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지역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준법교육을 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강제규정은 없지만 문화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합의가 된 부분이니 지켜야겠다 이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자체가 홍보가 안 되니까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규칙을 만들 때 인위적인 규칙을 좀 만들잖아요.”

“인권조례라는 게 없다면, 제정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전의 6, 7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갈색 계열로 아이가 염색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생활지도부장님은 너 내일 다시 당장 염색하고 오라고 했고, 담임 선생님은 그 정도는 괜찮아 하니까 아이가 두 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염색을 해야 해, 말아야 해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애는 (다시) 염색을 했어요. 친구는 염색을 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다른) 중학교 교사인데, 따진 거죠. 선생님한테 염색을 다시 하면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롭잖아요. 크게 제재가 아니라면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따진 거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인권의 기준이 선생님마다 다 다른거죠.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이 학교에,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허용적이고 인권적인 분인 거예요. 그 전 교장선생님 계실 때랑 학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걸 보면서 법과 제도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교사와 학교장이 그런 것을 어느정도 실현할 것인지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시대가 변화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허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장하는 권리, 생각하지 않는 책임과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한 군데만 권리주장을 하면 과연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집중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안 되고 아이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안 하려 하고,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 안 해요. 자기 존엄성이 있다면 남의 존엄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중을 뒤편에서 가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존재라는 대의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 반대 입장에서는 통제받고 있다고 보겠죠?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룰이 필요하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유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그런데 그 인권을 말하는 것이 참여의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도 발언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라인을

설정하거나 안전선을 만들 때 아이들의 자치활동을 시켜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미성숙한 존재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학부모와 교사와 같이 룰을 형성해 간다면 받아들이는 입장도 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② 아동청소년인권외의 국제기준을 논하기에는 제한이 큰 환경

초, 중, 고 교급이 다르고 아동청소년인권외에 관한 관점과 경험이 다양한 연구참여자들이지만, 각자의 입장을 떠나 현재 국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교내·외의 환경이 국제 기준의 인권 실현에는 제한점이 많다는 것에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우선, 법적·제도적 변화를 학교에서 실현하기에는 제한이 큰 물리적 공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표적으로 급식 공간을 예로 들었다. 학교에 급식은 보편화되었으나, 최소한의 식사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활 속에서 인권의 기반이 되는 상호존중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환경 자체가 근대적인 공간’ 이고 ‘학교라는 공간 구성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기에 아동청소년인권의 국제기준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저희 학교는 1400명 학생이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식당은 좁고 애들은 많고, 아이들이 5분, 10분만에 먹어야 하는 상황? (중략) 다른 나라의 아이들은 식사시간에 이런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할 텐데, 저희 학교, 저희 나라 아이들은 최대로 보장된 시간이 15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먹고 나가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덕시간이니 평상시에 이무리 때리면 안된디, 밥을 천천히 소화 잘 되게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된디 얘기를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참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학교 전체 교원에 비해 너무 학생들이 밀집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시설이나 제반, 제도가 학생들은 빨리 빨리 변해 가는데 그걸 나라에서 서포트를 못 하니 거기에서 오는 갭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간에 낀 교사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재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발생요인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둘째, 학교 조직이나 교사 개인이 질 책임에 대한 우려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요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고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학교 조직이나 교사 개인이 책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아동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하여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제와 인권경시가 일어나기 쉽다고 보고 있었다.

“저희는 자전거 면허시험을 희망하는 학생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업무가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다른 학교들이 안하는 걸 왜 우리가 해야 해?’ 저희는 개교 때부터 사고가 나면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왔던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담당 선생님이 ‘꼭 이걸 해야 하나? 애들 타다 등하교 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고 디니지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인식 차이를 느낀 거예요.”

“법의 통제라는 것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인권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교육적인 지도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부감이고, 생각이 드는 게 문제는 아까 무한책임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인에 가까운, 슈퍼맨에 가까운 능력을 다 요구하다보니까 어떤 환경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냥 교사의 무한한 자질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적 지도라는 것의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교사들의 지도 방식은 어떠하느냐, 이런 것의 질이나 수준이 통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당하고 있고 통제의 방식이고 인권을 경시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셋째,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교육들이 인지 중심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 인권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교 현실과의 괴리가 큰 때는 학생도 교사도 한계와 혼란을 겪게 된다. ‘애들한테 권리를 주지 않고 권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마찰이 일어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당혹스러운게 1, 2학년 때는 권리라는 걸, 아동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보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학년 쯤 되면 이제 이 (인권)수업도 저희가 2, 3학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2, 3학년이 되면 ‘이런 것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학교에 대한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야, 우리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기에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자전거 면허시험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뒤쳐지고 너무나 인지중심적인 교육만 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 ③ 국제 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한 제안

국제 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한 제안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첫째, 물리적 환경 변화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있는 강사진, 현실적인 예산, 각자를 존중하는 일상이 가능한 학교 공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의 국제기준 실현의 과도기에서 ‘제도와 현실이 다 같이 가려면 그 매개자가 학교, 교사’가 되기에 그 역할을 할 교사를 존중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도 혼란스럽고 아이들도 권리만 찾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과도기임을 인정하여 대립과 갈등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다. 결국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기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되, 교사가 인권과 관련해 부딪히는 여러 현실적 고민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 마련 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등에서 교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복지정보나 지원 네트워크가 없을 때는 그 역할을 못 하게 되거나, 역할을 하고도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교사들에게도 지역사회 복지정보나 지원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나 학교장 개개인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기에 법과 제도가 그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예산을 뺄 수 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사는 맨날 아이들을 두고 너희는 권리만 찾고 책임을 인진다 고 비난만 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도 왜 우리에게 권리를 주지 않느냐고 교사를 비난할 것이고 우리는 또 학부모를 욕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구조 속에 가지 않을까 하는 강사진에 대한 것, 예산지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권 침해당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중략) 저도 두려움은 있지요. 혹시 내가 애를 해주면 딴 애들도? 그런데 더 보수적인 애들이 많아요. 옛날에 구로 중학교에서 교칙을 바꿨어요. 엄색도 허용하고, 그런데 애들이 했을까요? 애들이 안하고, 놀라워요. 안 하고 지들끼리 자징이 되고 오히려 우리는 막 교복을 없애고 싶은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그러니까. 생활복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지는 않고 생활복 반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혔거든요, 여름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치마를 짧은 게 보기 흉하다 싫다 가치관이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싫다 하면 아이들과 협의해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는 그게 바로 인권적인 인권친화적인 학교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공간을 좀 주면 좋겠어요. 보건실이요, 베드가 딱 2개예요. 애들이 아프다고 왔다가 쫓겨나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학생회가 저희는 학생회가 없고 그냥 자치회인데, 학생회 친구들이 학운위에 들어와서 발언을 하거나 참관을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서 보내라니, 교무부장이 이번부터 아이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아니 ‘애들이 2시간 3시간동안 하는 학운위를 참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 학교 평가에 반영을 한 대?’ (중략) 한 학생은 ‘이렇게 어른들이 진지하게 학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을 때 토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뭔가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토론을 하는, 분위기부터가 의사봉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공부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는 참여와 자치권이 보장되는 한에서, 인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알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교사에게 무한대의 헌신이나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물리적인 안전망 복지시스템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 성인인 선생님하고 성인이 아닌 학생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이게 아이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중략) 몇 년 후에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최선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하고 어떤 게, 신고를 하거나 안하거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를 위한 거여야 한다는건데 어떤 것이, 케이스바이케이스이고 교사가 그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려주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교사들에게 알려주시고 협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구청에 교육지원과라든지 동사무소이건 건강가원지원센터 뭐 이런 거 다 협력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이 줄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복지적인 부분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무조건 신고의 의무만 주는 게 아니고 어땀어땀한 것이 복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도와야 한다 이런 거가 정보가 저희는 더 필요한 거예요.”

##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제로, 아동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지표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나 인권 측면에서의 실천경험과 인식을 나누기에 유용하다고 보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단일 권리이행의무자 집단으로 구성하여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①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경험

연구참여자들의 아동권리 관련 참여경험과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도적 반영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 자체의 모순이 종사자에게 과도하게 요구되거나 의무는 없이 권리로만 인식되는 왜곡된 인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권리라는 게 있으면 그림자는 책임’ 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권리주체와 권리이행의무자로서 서로의 인권 존중을 강조하나, 가끔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조하는 인권과 배려라는 것이 정말 아이들의 욕구와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자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을 거부하거나 갈등하는 아이들을 중재하는 경우를 보거나, 나눔의 기회를 통해 더욱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게도 된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합류하는 등의 변동기에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과정 역시 내면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보게 된다.

“우리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의무란다’ 우리가 이제 강사선생님하고 약속하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인권교육을 3년 동안 받았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중재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면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왔을 꺼야 그렇지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8회기를 무사히 마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하고 평가하면서 생각했던 게 3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받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게 비폭력대화 평화속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수업을 일단 접어놓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욕구하고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끔.. 지금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면 단점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진이 너무 빠져요. 이것들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수용해 주고 예를 들어 그 친구의 생각이 잘 못 났을 때 본인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장점으로 보자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스스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선생님 이 방 좀 쓸게요’라고 문을 닫고 저희들끼리 해결할게요.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오거든요. 그런걸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까지가 굉장히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나면 좋잖아요. 등짝 한 대 때리고 종결돼버리면, ‘야!!’라고 소리 지르면 조용해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웃음) 그런데 사실은 정말 힘들다,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생활 속에 스며 들어야..”

“새로운 아이들이 한명 들어올 땐 괜찮아요 근데 세 명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이 분위기가 다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이 분위기가 원래대로 올라가는데2~3개월이 걸리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힘이 건강하거든요.”

## ②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경험과 인식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지표에는 3년 전부터 인권교육이 반영되었으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종사자들은 그 이전부터 평가와 무관하게 종사자 대상의 인권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해온 경험들이 있었다. 종사자 대상 교육은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보수교육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고 편차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 대상 인권교육에서는 우선 잘 구성된 콘텐츠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인권교육이 가능한 강사진의 필요성과 생활 속의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센터 내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종사자가 과거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지 못 했던 인권에 대하여 어떻게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가, 생활 속에 쓰며드는 인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인권교육이 필요한 보호자일수록 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염려도 함께 나타내었다.

“한 3년 전 한 달에 한 번씩 전지협 회원이었을 때 인권감수성교육을 처음 받게 되었어요. 센터장이나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진을 각 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가 돼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선생님들 먼저 감수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교육을 했어요. (중략)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거는 불편했어요. 제가 현장에 와서 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게,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쪽 가다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4시간을 필수 받아야 되는데 상하반기 2시간씩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 그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받는거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교육을 와있는 종사자도 4시간 필수로 받아야 하니까 와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아는 내용으로 실제 현장의 사례들이 들려져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무관한 이미 아동 전체를 놓고 언론에서 노출이 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한 교육이다. 그냥 의무니까 받는 교육이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어서 아쉬운..”

“이를 테면 종사자하고 신규종사자 하고 경험이 차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탁이 나눠져서 주제가 다르게 주어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교육은 그런 식으로 경험을 했고”

“제 센터에서는 인권이 일생생활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저는 교재가 여러권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걸 본인이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 교재를 사용하는걸 어려워하고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쉽게 느낀 거 그 사례가 와 닿으면 그거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씩 보지만 그것도 참 잘하고 있구나 느끼게 됐고...”

“인권은 교육이나 강의가 아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나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인권이라는 것을 해택을 잘 못 받고 자라난 세대고 잘못하면 맞아야 돼 혼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화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배웠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덕목을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자니 지금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저는 제가 느낀 게 뭐였나면 저도 굉장히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계속 제가 깨지고 있거든요. 인권이 인권감수성이 제 몸에 스밀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 이제 센터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권교육을 수시로 하고 진짜 거의 중학교까지 가서 졸업을 하거나 몇 년씩 들었던 애들이라서 이렇게 일단 선물이라도 주니까 나의 권리도 알고 여러가지 의무도 교육받고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어느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직장 종사자들, 직장에서 인권교육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폭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인권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은 본인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 부모들이잖아요? 특히나 가정주부가 최고. 가정에서 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 ③ 제도적 변화 관련 경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근무하는 센터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참여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이제 막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거나 선정을 준비하는 자치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가 가지는 의미와 제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관점에 따라 아동청소년사업이나 인권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는 경험도 한 바 있었다.

제도적 변화에 의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역할하게 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사안

들과는 달리 학교와 관련된, 특히 교사와 관련된 이슈에서 경험한 공적인 신고체계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 O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광주 O구에 살고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몇 명 모집 직장에 모여가지고 구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로 토론하는 장, 그다음에 워크숍 형식으로 아이들이 조로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주제가 뭐냐면 ‘동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 도시 안에서 내가 뭘 어떤것을 펼쳐면서 사는 것이 좋은가?’,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모은 작업을 통해서 2017년에 선정이 됐어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반응을 하고 그런 점이 좋더라구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그룹이 7~8명이 모여서 신나게 토론도 하고. (중략) 8월 달에 결정이 되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질지 그냥 선정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조금 남는 과제로..”

“유니세프와 2015년 협약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지부인가? 아시아지부인가? 잘 기억이 안났는데.. 협약식을 O구청장이랑 같이 진행했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는게 아동청소년 구정참여단예요. 우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초등, 고학년, 중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2015년도에 시작되었고, 2016년도도 2회기. 2017년도도 1-2회기 진행을 했어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 O구청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더라구요? 저희 OO동에 가로등 설치라던지, 횡단보도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던지..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아이들을 ‘존중’해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별 것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소소한 것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결과를 문자로 전송해준 것이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았거든요.”

“우리는 노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책이 늘 노인쪽으로만 있고 (중략) 근데 투표권하고 연결이 이제 끝에 가서 되다보니... 궁시령거리는 것은 우리 뿐이야. 누구도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게 조금 저는 전체적으로 그것도 아쉽고, 전체에서도 아쉽고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권리협약 이런 것까지도 말할 때는 어른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을 못 느껴. 중사하는 우리만 이렇게 늘 그걸 논의하고 나누고 이래야 된다고 하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내년 선거를 바라보고 하는.. 굉장히 서둘러서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줄속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생각이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선생님한테 대략 한 40대 정도를 맞았어요. 자기 장딴지를 보여주는데 시퍼렇게 멍을 들었어요. (중략)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OOOO이었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래요.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민주인권센터가 있대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기는 해요. 대답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자료도 보냈는데 아무리해도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거예요.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 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가 반에서 맞았다. 이러한 부분은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서 방문해서 이야기해보겠다고 조치가 끝났어요.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해서 되었는지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과는 학교가 다르구나를 느꼈어요. 두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는 없었더라. 그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지 그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화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인권센터에 계시는 분이 제 학부모이세요. 학부모가 계시는 데 사실은 민주인권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도 무기계약직이고 조사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 문제로 전화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하시는 이야기가 아버지랑 같이 학교로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말고 교감 선생님을 만나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 통해 개입가능하지만 실제로 교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 당사자나 부모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해결가능하지 않습니다.”

### 3) 정책입안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다양한 정책 입안 및 실현의 경험을 가졌거나, 협회 차원의 활동을 주로 해온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한 변화를 다음 두 가지로 보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인권활동에 참여해온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인권에 관한 인식 확장 뿐 아니라 정책반영의 과정들을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게 된 점, 참여권을 소홀히 하던 지자체에서 이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때 아동 의견을 듣는 것이 의식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가서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더라고요. 의장단 아이들 내용을 보니까 처음 참여했던 아이들과 다르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결의문이 정책 반영률이 낮고, 부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고 부처들이 떨어져있고 정책들이 항상 복지부에서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관련해서 여가부도 교육부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쏟아 넣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이게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 대상이나 부모나 교사들 한번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들도 몇 번에 몇 년에 걸쳐서 하니

가 변화된 목소리를 낸다고 다 바뀌는 것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산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도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니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하니깐 우리들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고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서야겠다고 하는 이야기...”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아동관련 사업에서는 아동들 의견 들어준다는 것이 지금 거의 의식화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제 기준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에 있어 걸림돌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었다. 전달체계의 부족, 종사자와 아동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진행의 한계, 인권관련 신고로 인한 제한점, 특히 참여권에서 두드러지는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달체계의 문제>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사실 아동권리가 국가 단위에서 크게 인권위 중심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에 관 중심 전달체계를 거치고 나면 민간 쪽에서는 거의 전달체계가 없는 관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국민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와 닿지 않는, 붕 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인권교육의 문제>

“(인권교육이) 1-1, 1-2에서 끝나요. 2로 안 넘어가요.”

“제가 CRA가 궁금해가지고 본부에 갔었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활동 교수활동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CRA교육이 다 토론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 참여해서 본인들이 주제만 던져주고 계속 내용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백 시간 짜여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아둥들하고도 사실 토론 프로그램을 매일 해봤거든요 짧게. 그런데 아동들이 역량이 있다고 믿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아주 작은 소개만 해줘도 아이들이 다 하고 저는 결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마지막은 생각해보자가 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의견 많이 들었으니 생각해보자 근데 그게 일 년 정도 하니깐 아이들이 스스로 솔루션 만들어내고 정히고 다 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점인 게 현실에서 하기 힘든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딜레마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게 사실은 교육 내용이어야 하고 질문이어야 하고 소개여야 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인권교육을 지금처럼 강의식처럼 짜는 게 아니라 토론식으로”

<인권관련 신고로 인한 제한점>

“학교에서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예산, 학교의 제한있는 것과 교사의 인권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외부의 활동가가 들어가서 교사 인권교육을 하면 교사들이 확 거부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너희들이 아이들과 10시간씩 뷰아대봐라, 그러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게 현실화가 되는지. 그래서 교사들이 되게 인권교육에 대해 거부감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신청해서 인권교육을 했더니 애들이 강사한테 이것도 침해당했어요. 저것도 침해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 교사들이 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교사들이 아니 교육청에서 인권교육만 해서 받았더니 애들이 다 신고해서 징계를 받았어. 경찰에 신고까지 됐어. 다시는 안하겠다고 사립학교에 짝 돈 거예요.”

“큰 소리로 조용하라고 하니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바로 와서 선생님 난처해지고 입장도 떨어지고 결국 무혐의로 되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수업을 방해하는 애가 있어도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한 학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리가 주장이 되면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 당연히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할 만한 의무를 했느냐도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강조해서 들어갈 문제예요.”

<참여권의 제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에 사례에 생존, 기본, 발달, 참여권에서 모든 지자체가 참여권이 없다시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참여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근본적으로 인권의 개념과 인권감수성을 돌아보고,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교육환경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인권 이슈를 접근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인권의 개념,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 필요>

“중요한 건 인권이라는 개념은 개념자체가 완전무결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가치와 견제하고 융합하고 서로 보완 역할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인권, 민주주의, 시민교육, 평등개념 이런 것들이 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충돌할 때마다 딜레마상황들이 있거든요. 다른 가치들과의 딜레마, 교육을 받은 권리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고 그런 딜레마 지점들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게 그 문제를 딜레마 문제를 오히려 가치관의 딜레마 부분들을 꺼내서 그거에 대한 토론들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사회가 인권감수성이 높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아무도 깊이 고

민하면서 살지 않는데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의무로 받으라고 하니깐 인권에 대해서 첫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이 먼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권 교육,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근하는 방식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교 교육환경의 한계>

“학교 케이스가 굉장히 문제집약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인권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인권을 주입시켜보니까 학생은 교사를 공격할 너무 좋은 건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 너는 신고할 수 있어 이걸 사실 인권은 처벌을 받아야하는 게 먼저 주입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권의 기본은 저는 상호존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상호존중하면서 우리가 학교란 공간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인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특히 학교에 국한해서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들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가 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엄청난 경쟁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거기다가 아침 7시 30분부터 있어서 저녁 10시까지 있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이걸 어른들한테 그렇게 있어 보라고 해요. 다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그 안에도 끊임없는 통제가 있어요. (중략) 그건 완전히 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교사들이 지금 집단 무기력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질적인 인권교육 마련 및 다양한 형태(실천 중심, 온라인컨텐츠)의 인권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인권 이슈 접근 시도,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복지교육 강화, 교육환경의 변화 시도,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핵심옹호자 그룹 구성, 정책입안의 의도가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지원 마련, 통합적 접근 체계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 내에 아동권리 핵심 옹호자 그룹 만드는 소수의 전문가 그룹을 넘어서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양의 볼륨을 갖는 옹호자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실제로 관도 만나서 아동권리 얘기도 해보고 아동복지 현장도 만나서 해보면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몰라요. 아동권리 진짜 모르고, 그냥 아동권리협약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세세한 걸도 모르고 어떻게 추진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동핵심 옹호자 그룹의 슈퍼바이저 그룹, 그러니까 아동권리에 대한 슈퍼바이저 그룹, 이 그룹이 구축이 되어야겠다.”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CRA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짜리 전문가 교육 짜여 있잖아요.”

“조례 같은데 이런 걸 넣어야죠. 왜냐하면 저는 질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질적인 부분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안에, CRA 교육을 수료한 사람 뭐 필수 몇 명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관련직에 누구를 더 전문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변단체에서 아동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거나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C시에 전체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수련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인권교육을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나 약간 형식적으로 치우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통장단급 회의가 전체 모임이 일 년에 한 두 번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아동권리강사가 가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키고 여차피 교육 받는 자리에 한 손가락 넣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아동이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 민방위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동들 데리고 키우는 부모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키면 어떨까 하고 민방위 담당하고 통화를 알아봤는데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민방위 이것만 관련 교육만 해야 한다는 거죠.”

“10분정도 쉬는 시간에 VTR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인 개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예를 들면, 알뜰 신잡 같은 예능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토론이나 딱딱한 강연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들고 얘기하는 데 사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들어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해요.”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세울 때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걸 교사들이 틀어줘서 학생들한테 교사들이 교육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인권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초중고 별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마련했어요.”

“이걸 교육은 듣고 나면 땡이에요. 이걸 어떻게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도 포커스를 일상생활에서 내가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야 할 것 같고.”

“사범대 지금 교사나 되거나 사회복지사가 되는 기본적으로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에 대한 관점이 튼튼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제도를 하나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나 권력에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어느 공간에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학교에서 사실 교사들이 내가 무기력해, 내가 제일 피해자야 하지만 가장 큰 권력은 교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통제하고 아이들이 지직하고 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는 교사거든요. 아이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그걸 존경심이나 유교적인 관념에 의해 견뎠지만 지금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와 아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지식의 전달자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해, 애네는 또 그러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감도 깨졌고 우리가 존중 못 받고 있다는 게 그런 게 너무 크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학교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교사고 그 보다 더 큰 건 관리자예요.”

“정책들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해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해라 토론 수업 모형까지 다 해서 내려 보내면 교사들은 내가 당신들 공문 처리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혁신학교라고 하면서 자료 보내라고 하면서 할 일이 한 두 개도 아닌데 뭐 토론 수업을 하라면서 토론 모형을.. 이러면서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엄청 욕해요. 저희도 가면 무지 욕먹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을 가면 완전 탱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굴, 오렌지 맛있는 오렌지해서 보냈는데 학교에 가보면 요만한 탱자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걸 할 시간도 없고 여력이 없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어디서 뭐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인력을 안줘요.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처리 하는 것도 바쁜데.”

“문제는 학교에 가면 교사들은 가정을 얘기해요. 가정에서 불완전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대로 다른 아이들을 침해하고 불완전한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 방임하거나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학교에 위임, 위임도 아니죠. 강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학교 교사들은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사 분들이 사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덴마크 같은 데서는 한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애들을 학폭법 해서 법정에서 판단하듯이 하지 않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심리 상담 사라던가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면 시스템을 갖춰진 사람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지역복지사라든가 무슨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심리상담은 왜 불안정한지 가야되고 경찰인가 아무튼 뭐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애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서 애한테 맞는 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 4. 결론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에 있어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과 권리이행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집단심층면접과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역과 연령, 현장을 고려하여 구성된 각 집단의 논의는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변화되다 보니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과도기적 혼란도 함께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인권을 교권침해와 같이 대립과 갈등 측면에서 단순하게 접근하거나, 책임이나 존중은 없이 권리를 요구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권감수성을 키워온 교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인권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 모색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인권의 국제기준 실현에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벌 중시 사회, 아동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 아동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인권 관련 경험이 많은 편에 해당되고,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역시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교급이 높아질수록 진학에 대한 강조가 많아져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하는 시간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인권 담당 교사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 관련 상황이 나빠진다는 선행연구(김현수 외, 2016)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권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동청소년 스스로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인권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예산과 역량있는 강사진,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적합한 아동청소년인권 구현은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고 통합적으로 기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회와 인권친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충분한 지원과 통합적 접근이 함께 맞물려 나갈 때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국제 수준을 고려한 법과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제한점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에 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지수를 개발, 공표하고, 이를 관련 예산 배정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지역안전지수를 고려한 제안으로,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각 분야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눠 평가하여 공표하는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한 공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안전취약요인을 점검, 개선전략을 컨설팅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안전예산을 지원하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지수를 개발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비교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이 실제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은 제도와 현장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인권을 실현함에 있어 보다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리주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권리이행의무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권 이슈에서 권리이행의무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이행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인권 핫라인 마련은 익명성 및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용이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지식 및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차이가 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권리이행의무자의 딜레마나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인권을 바라보는 교사 등 권리이행의무자들의 시각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지만,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은 권리이행의무자 개개인의 역량이나 시각에 따라서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이행 의무는 국가가 함께 지게 되는 것이며,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구성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촉진할 의무는 국가에게 먼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권리이행의무자가 느끼는 부담과 혼란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권리이행의무자가 국가와 제도로부터 스스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친화적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인권에 있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참여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모든 아동청소년이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은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 나와 상대를 상호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인식을 넘어 경험의 인권을 마주하게 된다. 교육 주체로만 한정하여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인권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권리주체와 권리이행의무자 모두의 인식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연구참여 청소년들은 학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참여하였던 청소년의회활동 등을 ‘수준 있는 사람들만’의 ‘대화의 질이 상당히 높은’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는 애들만 하니까 하는 애들만 쪽 해서 아는 얼굴들만’ 있는 등 아동청소년인권 관련활동에서도 정보를 가진 자와 아닌자, 기회를 부여받은 자와 아닌 자가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성세대도 현재의 인권 기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나, 기성세대가 경험한 과거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제한점이 많더라도 인권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동질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이 강조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 세대의 경우, 인권 인식 수준이 각자의 생활환경과 부여받은 경험의 기회에 따라 오히려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의 혼란을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의 과도기로 단순히 생각하고, 이후 법과 제도가 반영된 상태로 물리적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구성원의 아동청소년인권 수준과 인식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사한 경험 수준을 공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현재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식 및 경험에서 보이는 격차에 주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아동청소년이 권리이행의무자가 되었을 때 더 큰 혼란과 합의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한 전략에 있어 세심한 분석과 그를 고려한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지정 토론

신인순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 보장하라! 아동의 휴권(休權)과 유권(遊權)을!

-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연구에 대한 토론문-

신인순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요즈음 주변을 둘러보면 초등생도 다크써클을 배꼽까지 그리고 다닌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의 26.5%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여가가 없다고 하고, 17.8%는 여가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도 안된다고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학력이나 스펙만으로 양성되지 못할 것인데, 여가도 없이 잠도 없이 아직도 전투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단연코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다. 이 권리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약속이다. 한국을 포함해 약 200개국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아동권리협약에는 전 세계 어린이가 모두 함께 누려야 하는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다. 특히 협약의 제 31조가 바로 쉼 권리와 놀 권리를 명시한다. ‘[레저, 오락, 문화 활동]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울하다.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엄마의 산후조리원 동기 아가들과 성장을 비교당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부터 당락 때문에 울고 웃어야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미 대입 결과의 운곽이 나온다는 무시무시한 언어폭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찌어찌 살다가 대학생이 되고 보면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라며 청춘 위로가 들려온다. 휴우! 학습권, 교육권을 보장하느라 늘 뒷켠에 감춰져 있던 우리들의 휴권(休權), 유권(遊權)!

이러한 때에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연구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눈이 번쩍, 귀가 쫑끗”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천한 경험과 지식으

로 2차에 걸친 자문을 마치고 연이어 하게 된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이번 주말에 도착한 연구 파일 3개에는, 빠듯한 시간제한 속에서도 애쓰신 연구진의 노고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각설하고, 연구개요와 과정에 대한 의견이다.

연구기간과 예산 면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성비 높은 연구 프로젝트였다고 평할 수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망라하였고, 아동 1,179명, 보호자 649명, 교사 200명의 데이터를 확보해낸 점, 권리보장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자원 인식에 관한 문항, 결핍지수, 사회적 바람직성, 친사회성 등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넣는 유연한 연구과정과 FGI 원자료에 담겨있는 풍성한 논의들은 그간에 연구진이 연구는 물론이고 아동 현장과 함께 호흡을 해온 헌신의 산물로 보인다.

둘째, 양적연구에 관한 의견이다.

연구개요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토론자는 아동, 부모, 교사 집단 간 인식 비교가 그다지 궁금하지 않다. 사회적 바람직성까지 통제하고 살펴보았지만, 이 세 집단은 본질적으로 관용의 정도 또한 다르므로, 집단차가 있을 때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기도 애매하다. 아동, 부모, 교사 순서로 인권인식에 집단차가 나온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아동에게 인권의식을 성인이나 교사에게 보다 더 적극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궁금하다면 소득차, 성적차 등 후반부의 내용이다. 집단차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는데, 결핍차, 경제수준차, 성적차에서 통제해볼 필요가 더 크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체계적 오류는 측정도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잘못 묘사하는 경우를 말하며(Rubin and Babbie, 2008), 측정결과의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다(김용석, 2008). 뭔가 그럴싸하게 답해야 한다는 압력이 아동, 부모, 교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보다 결핍, 경제수준, 성적이 다른 아동들 간에서 달리 답하게 할까 우려되는 것이다.

셋째, 질적연구에 관한 의견이다.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되고(김수정, 2015), 단기 간에 심층적 자료를 다량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 활용된다(김성재 외 역,

2007). 그러다 보니 연구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쉽게 말해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내용이라는 진실성이 제시되곤 하기 때문이다.

풍성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고 보이나 아쉬운 점은 표집방법에 대한 설명누락이다. 원자료 인용부분을 읽어보면 전지협,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민주인권센터 등이 수시로 나오고 참여자의 특수성은 질적연구의 아주 중요한 지점임에도 자료수집과 분석에는 기본적인 어느 FGI에도 맞는 기성품 같은 서술만 있다. 예 측컨대 자료 분석에 빠듯한 일정으로 인한듯하다.

정리하면, 연구참여자의 연계과정이나 선발사유가 서술되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표가 좀 더 보완된다면 질적 연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하는 설득력에서 힘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뒤에 연구결과를 읽을 때 누가 이런 의견을 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독성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가 보여주는 신뢰도 타당도 등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흔히 triangulation(삼각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엄격성을 드러내고 신뢰를 얻어 독자를 설득하게 된다. 본 연구도 풍성한 결과와 논의가 독자에게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더 확보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이다.

이제 위원회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나르기보다 수로를 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간 “열일”하는 위원회의 노력 덕분에 내년이면 곧 놀 권리 정책도 나올 것이고, 기업과 아동권리에 관한 기초연구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부모의 노동환경과도 연동되어 있다는 일가정양립 논의도 제시되는 등 다방면으로 아동·청소년인권엔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연구도 궁극적으로는 위원회가 아동인권 증진의 적소와 적시를 찾아 효율적으로 영향력 있게 가동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라면, 그 어느 협회도 단체도 아닌 국가위원회라면, 공교육현장에는 자료와 프로그램, 연수 등이 공교육 라인으로 전달되게 하고, 일선 학교는 시범운영 단계에서만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유니세프 같은 단체도 (가칭) 맘껏 놀며 배우는 학교 만들기 길라잡이를 개발 중이며 이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달하고 특히 서울 성기는 MOU 추진으로 속도를 내고자 한다.

나머지 여력은 참여활동에 힘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같은 국가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동인권에 노력하는 월드비전, 이번 정부 들어 첫 세계대회- 2023년도 세계잼버리-를 유치한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메이저

급 단체들의 인권교육에도 쓸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사교육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여러 학원들도 아동의 최근거리 환경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곳들로 갈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라면 가정이든, 학교든, 단체든, 학원이든, 모든 교육(Formal, Non-Formal, In-Formal Education)의 장에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의 인식과 관련한 의견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들은 놀 권리 뿐만 아니라 쉴 권리를 호소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서도 쉴 권리를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놀 권리는 각종 마스크와 학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모니터링, 캠페인, 실천이 되고 있는데 비해, 쉴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아이들 일정표에서 가로 줄 좀 지우자’는 전국재 - 前 YMCA 간사 - 박사의 오랜 주장을 빌어 아동의 쉴 권리 확보를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아동기에 경험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사람의 인생에 주는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아동기에 경험한 좋은 경험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George E. Vaillant의 글을 인용하건데 ‘참여’라는 자기주도적 경험이나 타인과의 성공적인 소통경험은 아동 인권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본 연구의 토론자로서 ‘참여란 아동인권의 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방법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첨언하고자 한다.

# 지정 토론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지정 토론

김은정 소장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아동 NGO에서 근무하면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 및 경험 조사를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동 NGO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동권리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연구로 보았다. 특별히 제 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번 국제기준 인식과 경험 조사가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그리고 부모와 교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다만 3개 시에서만 조사가 진행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생각한다.

그리고 경험조사에서 보호자, 교사들의 인식에서는 많은 부분 교사, 보호자들도 권리, 인권내용에 혼란스러워 하는 점도 공감한다. 아동들의 시각만으로, 성인들의 시각만으로 권리교육, 인권교육 내용이 이루어져는 안 되며 시대와 사회적 합의가 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육 내용으로 전 국민적 확산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다.

### 1. 권리. 인권 용어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시각차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이다<sup>2)</sup>”라고 표현할 수 있다.

UN은 인권을 “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및 인간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와 부작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법적 보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조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1948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sup>3)</sup>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sup>4)</sup>에서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은 권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권리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말한다. 인권이 현실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권리의 내용”, “권리의 근거”로서의 4가지 핵심구성요소가 필요하

2) 인간은 권리를 지닌다. 즉 인간은 권리를 누릴 자격을 지닌다. 또는 인간은 권리를 주장 또는 청구한 자격을 지닌다(한국인권재단 2015)

3)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즉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권리주체인 A가 의무주체인 B에게 C를 근거로 권리내용인 D를 주장한다.” 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의무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의무주체인 B가 권리주체인 A에게 C를 근거로 권리의 내용인 D를 보장한다” 고 표현할 수 있다.

인권의 분류에는 시민적 권리<sup>5)</sup>, 정치적 권리<sup>6)</sup>, 경제적 권리<sup>7)</sup>, 사회보장과, 가족, 임신부, 아동의 권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사회적 권리<sup>8)</sup>가 있고 교육권,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 문화적 권리<sup>9)</sup>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표 1〉 인권의 세대에 따른 분류

구분	분류	내용	특징
1세대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 개인의 소극적 권리 서방 자본주의 국가 주도
2세대권리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사회권)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 등	평등, 집단의 적극적 권리 사회주의 국가 주도
3세대권리	연대의 권리	민족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국제개발 협력 등	박애(연대) 공동 제의 적극적 권리, 국제협력의 중요성 제3세계 국가 주도

( 출처: 한국인권재단 p25, 2015)

또한 인권의 세대별로 따르는 분류로 해보면 1세대 권리에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가 중심적이고 자유. 개인의 소극적 권리인 서방 자본주의 국가가 주도한 반면, 2세대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사회권), 평등. 집단의 적극적 권리며 사회주의 국가주도하며, 3세대권리는 연대의 권리며 환경권 평화권, 국제개발 협력(원조)등이 포함된 적극적 권리며 제3세계 국가가 주도 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의 인권보장의 의무에는 기본적으로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의 관계로 구성되고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부담자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5)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자유권 규약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고문금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권리,  
 7)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8)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 임신부, 아동의 권리,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보호,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9) 교육권(사회권규약 13조)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적생활에 참여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 등

UN은 국가의 인권의무를 존중(respect) 및 보호(protect) 실현(fulfill)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인권의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때 효과적인 인권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sup>10)</sup>.

권리(rights), 인권 (human rights)을 영어로 rights 로 표기되어 국내에서는 권리와 인권으로 정리가 되어 활용되고 있어서, 인식에 혼란스럽다. 그리고 인권이란 용어는 과거에 좌파적 프레임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성인들이 있다. 세대별로 권리, 인권용어에 다르게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 소통 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적 태생의 한국 아동 NGO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아동권리”, “아동권리옹호” 를 주요 용어로 사용하는 편이고, 반면 문화관광부, 청소년부, 여성가족부 관련되어 왔던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청소년인권” 으로 오늘의 현실에 접근하고 있다

사회지표 지수는 당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현상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심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같은 한국 사회이지만, 행복이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인권지표에 의한 용어로 한국의 아동사회에 지표, 지수의 용어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질적연구 파트에서 아동청소년인권지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청소년의 역량지수,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아동권리지수 등 공공기관, 아동단체 등에서 아동행복, 권리, 삶의 질, 청소년인권에 대한 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행복지수 등 다양한 아동 관련하여 지표 지수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 정부부서가 나뉘어져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교육부에서는 학생 등으로 명칭이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현시점에서 아동, 청소년인권지수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질문하게 된다.

## 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기반의 활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70년 동안 어린이사업을 수행해온 아동복지기관을 거치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업무 수행하는 아동NGO로 변화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정체성에는 Social-work, child welfare을 기반으로 UNCRC, SDGs (중 아

10)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2015) 한국인권재단

동관련)의 내용들이 스며들어있다. 최근에는 아동들의 권리옹호를 기반으로 아동들의 환경변화, 정책적, 제도개선 등, 공적체계 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의 좋은 성품 위한 인성교육(12회기)에서 구성되는 요소가 존중과 배려, 협력, 나눔의 요소를 중요시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수행중이며, 이어서 아동권리교육과 유엔아동권리헌장 포스터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으로 2년차 배포하고 있고, 유아용 포스터도 이미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조사 설문에 아동의 놀 권리, 쉼 권리, 학교폭력 관련한 문항이 들어 간 점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어린이재단이 아동생활시간을 조사하면서, 공부시간은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짧아짐을 알게 되었고, 세계기준의 아동들의 생활 권장시간에 차이가 많음을 알고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에서 2017년 대선공약에 11,303명의 아동들로부터 접수한 내용에서 당연히 가장 많이 변화를 요구한 내용은 50%이상인 전반적인 교육시간 축소, 사교육 축소, 공교육 강화를 원하였고, 놀이공간과 예체능관련 학교시간 확대가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연구원들의 연구에서도 학업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련한 제도 개선, 학교주변 보행도에서의 안전한 공간이 되는 “엘로우 카펫” 전국에 400여개가 넘게 설치 중이고, 최근에는 학교주변에 “금연구역” 요청이 아동들로부터 쇄도하여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희귀 난치병 아동 가구의 입원병원비 개선에도 연구를 통하여 기반을 근거로 대 정부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국에 7개의 아동옹호센터가 업무 수행중이며, 광주시에서는 아동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지역의 아동관련 공공기관, 아동단체들과 네트워크로 아동들의 권리기반에서 환경을 바꾸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재단은 수시로 아동들의 욕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권리기반의 교육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인 부모, 교사, 보육교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불구하고 NGO들에게 활동의 한계, 인력 등으로 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전국민 인식 개선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직도 아동권리, 청소년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전 구성원들에게 매우 필요한 실정이며, 인식 개선활동이 아동단체, 청소년단체뿐

만 아니라, 정부, 공공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공감한다.

아동권리교육, 인권교육 내용이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제도와 지침은 그 사회의 지표가 되듯이, 사회적 지표는 담은 아동권리, 인권교육의 내용은 균형과 조화<sup>11)</sup>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합의된 상태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남녀노소, 성인, 아동 청소년들 모두에게 전달,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5년 지난 후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25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아동단체들만 아동권리 확산에 노력하여왔는가? 아동 단체들만이 아동들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학교폭력, 아동학대로 매년 수십 명씩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하고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은 어떠한 하고 있는가?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 제정, 2016년 아동권리 헌장 선포, 되는 등 조금씩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최근 한국의 아동 출산율 절벽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현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장 공평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국가는 관심과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 연구소에서 최근 OECD 국가 대상으로 아동수당지급 시작시기, 기간, 금액 등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수당 지급기간이 오래될수록, 금액이 많을수록 아동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수당 지급에 정부관계자들은 입법화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동수당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11) 아동과 성인과의 권리, 아동과 아동과의 권리, 성인과 성인과의 권리를 고려필요.

#### 4. 질문사항

1) 아동. 청소년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달라서,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역량지수 등 아동 NGO에서 지수 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인권지수가 아동권리 인식 활성화를 위해 이 시점에서 좋은 대안인가?

2) 설문지 내용에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이행자(주체) 로 2개의 시각(아동과 성인)으로 정의하여 질문이 구성이 되었는데, 권리의 근거<sup>12)</sup>와 권리의 내용<sup>13)</sup>이 상호소통으로 권리의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가 (아동과 성인, 아동과 아동, 성인과 성인)의 시각이 고려된 상태로 권리/인권의 입장이 정리 될 수는 없는가?

---

12) 권리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덕적, 정치적, 법적 근거

13)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 지정 토론

서수연 센터장 (광주 월곡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에서 바라 본 인권과 경험

### 서수연 센터장 (광주 월곡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해마다 2차시,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하고,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다소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동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권의식이나 상황이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교육의 방식과 내용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 아동의 입장과 시각에서 바라보기

첫째 인권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광주지역 300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인권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집단프로그램은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인권교육이 의무적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자체 예산이 매우 적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양질의 강의를 시도해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학습법이 부재합니다. 인권교육 강사들은 며칠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민간자격증을 부여받습니다. 아동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반복되는 강의는 부족부족 성장하는 아이들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시각을 자유롭게 확장시키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합니다. 강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강의하는 사람의 삶과 관점이 녹아있을 때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양성과정을 거친 책상에서 책상으로 옮겨 다니는 인권교육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지 현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권감수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90% 이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혹은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가진 가정에 속합니다.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긴다거나 주말이나 휴가철에 여유 있게 캠핑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고 진로를 고민하며 탐색하는 아동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구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부모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시각

해마다 반복되는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의거하여 2차시, 4시간이상 수행해야하는 하나의 과업이자 숙제입니다.

첫째, 인권교육을 다른 회의 중간이나 첫머리에 1시간씩 편집하듯 집어넣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로서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30여 시간이어서 교육의 차별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백 명 이상 집단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수료증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둘째, 해마다 들어야하는 교육의 첫머리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권의 역사나 인권의 개념을 알기위해서가 아니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아이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호흡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60%이상이 5년차 이상인데, 현재까지 인권교육은 그 내용과 질에서 다양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셋째,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힘든 구조에서 인권이 꽃피는 환경을 조성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3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교육과 회의 외의 교류가 전무할 뿐 아니라 교사들이 아프거나 일이 있어도 평균 30여명의 아동들의 아동지도에서 식사까지 책임져야하므로 월차나 연차도 맘 놓고 쓰기 힘듭니다.

예산의 어려움은 더 심각합니다. 2017년도 운영비 중 토요사업비 60% 삭감으로 토요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주말 아동들의 방임으로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 운영비 예산이 4.8% 인상에 그친 것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매월 869,000원을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 일자리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행복과 존중을 이야기하는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평화적인 소통으로 시작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동들에 대해 모든 것을 챙기고 보살펴야하는 미숙한 존재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알려주어야 할 부속물내지는 평생의 숙제로 치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이는 어리나 지혜롭고 자유로워 보이거나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함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의 현명함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참여권이나 예산책정을 배제하는 꼼수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와 종사자들은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는 불안을 겪으며 아이들을 살피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른들이 행복해야하고 어른들이 행복하려면 다양한 혜택과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낼 때만이 아동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나와 사회를 신뢰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인 쇄 2017년 11월  
발 행 2017년 11월  
발 행 인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전 화 (02) 2125-9700 I F A X I (02) 2125-9718  
Homepage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리드릭

---

ISBN 987-89-6114-568-8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